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개표 절차 및 부정선거 의혹 설명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목 차

I . 투표 및 개표 절차 1

① 사전투표 1

1. 사전투표제도 / 1
2. 통합선거인명부 / 1
3. 사전투표용지 / 2
4. 사전투표 진행 / 2
5. 관내사전투표함 보관 등 / 6

② 선거일 투표 8

1. 선거일 투표용지 / 8
2. 선거일투표 진행 / 9

③ 개 표 11

1. 개표방법 / 11
2. 개표소 설치 / 11
3. 개표소 출입이 가능한 사람 / 11
4. 개표진행 / 13
5. 투표지 보관·폐기 / 18

II . 사전투표 · 개표 통신망 보안 19

① 사전투표 보안 19

1. 명부단말기 / 19
2. 유·무선 통신장비 / 19
3. 전산센터 / 19
4. 통합명부시스템 / 20

② 투·개표보고시스템 보안 20

목 차

Ⅲ. 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진실 21

① 유권자의 표심인 선거통계에 대한 의혹제기에 대해 21

1.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자 간 사전투표 득표비율 63:36 / 21
2. 일부 선거구에서 정당의 관내득표수 대비 관외득표수 동일 / 24
3.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선거일 투표 득표율보다 10%p 높음 / 25
4. 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의 개표결과 바뀜 / 26

② 선거절차의 이해부족에서 발생한 의혹제기에 대해 27

【사전투표】

1. 사전투표용지 2차원 바코드(QR코드) 사용은 선거법 위반 / 27
2. 2차원 바코드(QR코드)에 국민 500만 명의 개인정보 수록 / 28
3. 2차원 바코드(QR코드)에 52자리 암호화된 코드 존재 / 29
4. 인구수보다 투표자수가 더 많은 유령표 / 30
5. 화성시갑 봉담읍 관내사전투표자수가 0명 의혹 / 31
6.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전투표자수 / 31
7. 관외사전투표함을 CCTV가 없는 헬스장에 보관 / 32
8. 관외사전투표지를 파쇄한 흔적 발견 / 33
9. 우체국에서 관외사전투표 회송용봉투 부실 관리 / 34
10. 사전투표함 보관상황 관제모니터의 '연결이 해제되었습니다' 등 발생 / 34
11. 선관위 직원이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서 특수봉인지 교체 / 35

목 차

- 12. 송파구 사전투표참관인의 특수봉인지 서명이 본인 필체가 아니라는 주장 / 36
- 13. 양천구선관위 앞 관내사전투표함의 훼손된 특수봉인지 발견 / 37
- 14. 남양주선관위 물류센터에서 특수봉인지 등 무더기 발견 / 38

【투표용지】

- 15. 동작구선관위 투표용지 파쇄 의혹 / 38
- 16. 기표하지 않은 투표지 발견 / 39
- 17. 정규 투표용지와 다른 투표용지 전국에서 다량 발견 / 40
- 18. 접힌 흔적이 없는 돈다발형 투표지 다량 발견 / 41
- 19. 정상 기표된 투표지가 재확인대상으로 분류 / 41
- 20. 투표용지는 남양주시, 선관위 직인은 의정부시 / 42
- 21. 포스트잇 형태의 붙어 있는 투표지 발견 / 42

【증거보전】

- 22. 남양주선관위 투표지 보관상자 봉인상태 부적정 등 / 43
- 23. 투표지 보관상자 위원장 봉인 해제 후 재봉인 / 44
- 24. 선관위의 통합선거인명부 제출 거부 / 45
- 25. 증거보전 집행 시 비례대표투표지 미제출 / 46
- 26. 투표함 투입구에 부착된 특수봉인지 훼손 / 46
- 27. 투표함 은닉 논란 / 47

【선거장비 등】

- 28. 임차서버 폐기로 선거조작 증거인멸 / 48
- 29. 사전투표장비에 중국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여 결과 조작 / 49

목 차

- 30. 비주얼베이직 프로그램 사용 개표시스템 집계 조작 / 49
- 31. 선거장비는 인터넷 또는 무선통신 사용 / 50
- 32. 투표지 심사계수기에 데이터 전송 및 출력기능이 있어 정보유출 가능 / 51
- 33. 투표지분류기에 의한 개표결과 조작 / 51
- 34. 투표지분류기에 무선통신 장치 존재 / 53
- 35. 투표지분류 시 후보자 혼입 발생 / 54
- 36. 투표지분류기 고장으로 교체 / 55
- 37. 투표지분류기에 불필요한 고성능 칩 2개 탑재 / 56
- 38. 광주정부통합센터에 서버 미설치 / 56
- 39. 전산장비 사업의 투찰률이 100%에 근접 / 57

【기 타】

- 40. 중국인을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하여 개표결과 조작 / 57

③ 선거관리가 완벽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59

- 1. 잔여투표용지 탈취 / 59
- 2. 빵 상자에 투표지 보관 / 59
- 3. 선거인수보다 투표수가 많은 관내사전투표 발생 / 60
- 4. 투표함 자물쇠 일부 미봉쇄 / 61

I ▶ 사전 투표

1. 사전투표제도

- 사전투표란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 동안에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2013년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실시되었고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 사전투표가 도입된 후 사전투표기간 중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유권자 투표 편의가 향상되었습니다.

2. 통합선거인명부

- 통합선거인명부는 구·시·군선관위가 구·시·군의 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을 이용하여 중앙선관위가 하나로 통합하여 만든 명부입니다.
- 선거인이 별도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전투표기간 중에는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를 가능합니다.
- 통합선거인명부는 폐쇄망인 선거전용 유선통신망을 사용하고 통신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전용 폐쇄망으로 구성된 무선(3G/LTE) 통신망을 보조 통신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선거인이 사전투표에 참여하면 통합선거인명부에 투표 사실이 기록되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투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사전투표운용장비 구성 ■



본인확인기



명부단말기



투표용지발급기



보관가방



무정전전원장치(UPS)



유·무선통신장비

3. 사전투표용지

- 사전투표용지는 인쇄소에서 미리 인쇄하는 선거일 투표용지와 달리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이 본인 확인을 마치면 투표용지발급기를 통해 현장에서 출력하여 선거인에게 교부합니다.
- 투표개시 전과 투표마감 후에는 투표용지발급기의 출력 부분이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투표용지를 임의로 발급할 수 없습니다

4. 사전투표 진행

사전투표 준비

- ▶ 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를 시작하기 전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사전투표소 설비 상황 등을 확인·점검합니다.
- ▶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사전투표함 및 사전투표 운용장비가 이상 없는지 확인하고 기표소 안의 낙서나 표시물 부착 여부를 검사합니다.
- ▶ 그리고 투표함을 1회용 자물쇠로 잠근 다음 특수봉인지에 투표관리관과 정당 또는 후보자별로 신고한 투표참관인 각 1명이 서명한 후 자물쇠 위에 부착하여 봉인합니다.

■ 사전투표 진행 흐름도 ■



1 투 표 개 시

- 오전 6시 정각에 투표관리관이 투표개시를 선언하면 선거인은 투표소로 입장합니다.
- 투표소 입구에서 투표안내요원에게 관내 또는 관외 진행방향을 안내받아 본인 확인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Q.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 관내선거인은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구·시·군 안에 주소지가 있는 선거인이며, 관외선거인은 구·시·군 밖에 주소지가 있는 선거인입니다.
- ▶ 국회의원선거에서 1개의 구·시·군 안에 2이상의 선거구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구를, 지방선거에서는 기초의원선거구 단위로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을 구분합니다.

2 본 인 여 부 확 인

- 선거인은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 받습니다.
- 본인확인기 창을 통해 자신의 성명·주소 등이 맞는지 확인하고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펜을 이용하여 성명을 기재합니다.

Q. 내 신분증명서가 저장된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 ▶ 선거인이 사전투표를 하면 이중투표 방지를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2항에 따라 신분증명서 사진·성명·생년월일 등 일부가 전자적 이미지로 저장되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 후 일괄 삭제합니다.

Q. 지문인식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는 건가요?

- ▶ 사전투표소에서 손도장을 찍는 것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았음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 지문 인식을 통해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3 투표용지 수령 및 기표

① 관내선거인

- 관내선거인은 투표사무원에게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로 들어갑니다.
- 그리고 한명의 후보자 또는 하나의 정당을 선택하여 기표한 다음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게 투표지를 접어 관내사전투표함에 넣고 사전투표소에서 나갑니다.

② 관외선거인

- 관외선거인은 투표사무원에게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받아 기표소로 들어갑니다.
- 그리고 한명의 후보자 또는 하나의 정당을 선택하여 기표한 다음 투표지를 접어 회송용봉투에 넣고 봉합하여 관외사전투표함에 넣고 사전투표소에서 나갑니다.

Q. 투표용지에 있는 바코드는 어떤 정보가 들어 있나요?

- ▶ 「공직선거법」 제151조제6항에 따라 사전투표용지에 표시된 2차원 바코드(QR 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선관위명, 일련번호가 총 31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차원 바코드(QR코드) 예시 : 2020041500020211010111010000001>

202004150002	02110101	1101	0000001
선거명(12)	선거구명(8)	관할선관위명(4)	일련번호(7)

Q. 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하지 않고 가지고 갈 경우 어떻게 되나요?

- ▶ 투표지를 가져가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투표함에 투입하고 퇴장하여야 합니다.

Q. 투표용지와 투표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 투표용지는 선거인에게 교부하기 전 선거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것을 말하며, 투표지는 선거인에게 교부하여 선거인의 의사가 반영된 것을 말합니다.

4투 표 마 감

① 투표마감

- 사전투표는 오후 6시 정각에 마감하며, 오후 6시 이전에 도착하였으나 투표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선거인이 있으면 대기번호표를 나누어 주고 선거인이 모두 투표를 마치면 투표를 마감합니다.
- 투표관리관이 투표마감을 선언한 후에는 사전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② 관외선거인 회송용봉투 우체국 인계

- 투표관리관은 통합명부시스템에 기록된 관외선거인 투표용지 교부수를 확인한 다음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관외사전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용지 교부수와 회송용봉투수를 확인합니다.
- 회송용봉투는 사전투표소에서 관할 우체국에 직접 인계하거나 구·시·군선관위로 이송한 다음 관할 우체국에 인계합니다.

Q. 관외사전투표함에 회송용봉투에 넣지 않은 투표지가 들어 있어요

- ▶ 관외선거인이 회송용봉투에 투표지를 넣지 않고 투표지만 투표함에 투입하거나 관내선거인이 투표지를 관외사전투표함에 잘못 투입하여 발생합니다.
- ▶ 관외선거인이 회송용봉투에 투표지를 넣지 않고 투표지만 투표함에 투입할 경우에는 개표소에서 사전투표 개표결과 선거인수보다 투표수가 많아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③ 관내사전투표함 봉쇄·봉인

-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관내사전투표함 투입구 덮개를 닫고 봉쇄 잠금핀을 끼운 다음 특수봉인지를 부착합니다.
- 그리고 투표관리관과 정당·후보자별로 신고한 투표참관인 각 1명이 특수봉인지에 서명합니다.

④ 투표함 및 투표관계서류 등 인계

- 투표관리관은 투표함과 투표관계서류를 이송차량에 실어서 정당·후보자별로 신고한 투표참관인 각 1명, 호송 경찰과 함께 구·시·군 선관위로 이송합니다.

5. 관내사전투표함 보관 등

1 관 내 사 전 투 표 함 보 관

- 사전투표함이 구·시·군선관위에 도착하면 정당추천위원이 사전투표함의 봉쇄·봉인상태를 확인합니다.
- 봉인지가 부착되지 않았거나 이송과정에 훼손이 된 것이 발견되면 투표관리관과 투표참관인이 직접 보완하고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 이상이 없거나 보완이 끝나면 사전투표함을 CCTV 및 보안경비시스템이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고 보관장소의 출입문을 사무국(과)장과 정당추천위원이 서명한 특수봉인으로 봉인합니다.
- 선거일 투표마감시각 후에 사전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할 때까지 사전투표함 보관장소는 CCTV로 녹화되며, 중앙선관위에 설치된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24시간 모니터링을 합니다.

Q. 관내사전투표함 보관기간 중 보관장소를 열람할 수 있나요?

- ▶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장소를 열람하려면 중앙선관위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하거나 시·도선관위에 방문하여 관제모니터를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Q.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장소 녹화영상은 언제까지 보관하나요?

- ▶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장소 녹화영상은 투표지 및 선거관계서류와 동일한 기간 보관한 다음 폐기하며, 보관기간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해당 영상을 열람(비용발생)할 수 있습니다.

※ 투표지 및 선거관계서류 보존기간(공직선거법 제186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7조)
당선인의 임기중 보존이 원칙이나 정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정송이 종료된 경우 구·시·군선관위의 결정으로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2 관외사전투표 회송용봉투 접수

- 관외사전투표 회송용봉투를 우체국으로부터 배달받으면 배달된 회송용봉투수를 세어서 배달증에 기재된 통수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 확인을 마친 회송용봉투는 매일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한 자리에서 접수통수를 확인한 후 우편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의 투입구 덮개를 봉인합니다.

3 사전투표함 개표소 이송

- 선거일 오후 6시 후에 정당추천위원과 정당·후보자별 1명의 개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우편투표함을 봉쇄·봉인하고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장소의 출입문을 열어 투표함의 봉쇄·봉인상태를 확인합니다.
- 개표참관인은 투표함 상태를 살펴본 후 이상이 없으면 투표함 이상유무 확인서를 작성하여 구·시·군선관위에 제출합니다.
- 관내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은 정당추천위원, 정당·후보자별로 신고한 개표참관인 각 1명, 경비경찰과 함께 개표소로 이송합니다.

Ⅱ 선거일 투표

1. 선거일 투표용지

① 투표용지 작성·인쇄

- 구·시·군선거위원회는 선거기간개시일 전까지 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를 결정하여 인쇄소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합니다.
- 투표용지 인쇄매수는 예상 사전투표자수 및 종전 선거의 투표자수를 고려하여 통상적으로 선거인 수의 70%에 해당하는 수로 결정하고, 후보자등록마감 후 기호가 결정되면 투표용지원고를 작성하여 인쇄합니다.
-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동안에는 정당추천위원과 직원으로 구성된 인쇄감독반이 인쇄소에 상주하여 투표용지 인쇄상태를 감독합니다.

Q. 인쇄소에서 투표용지가 유출될 가능성은 없나요?

- ▶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동안 인쇄감독반이 해당 인쇄소에 상주하여 정확한 매수만 인쇄되도록 관리·감독하고, 투표용지 인쇄감독 점검일지 작성을 통해 매수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 또한 투표용지 인쇄가 끝나면 인쇄원고 등을 삭제·파기하고 잘못 인쇄되거나 훼손된 투표용지 등은 현장에서 위원 또는 직원 입회하에 폐기하므로 투표용지가 유출될 수 없습니다.

② 투표용지 보관·송부·교부

- 투표용지를 송부하기 전 투표관리관이 직접 확인한 다음 포장하여 봉합·봉인한 후 구·시·군선거위원회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 구·시·군선거위원회는 선거일 전일 투표용지를 정당추천위원 입회 하에 읍·면·동선거위원회로 송부하고, 읍·면·동선거위원회는 선거일에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합니다.

2. 선거일투표 진행

선거일투표 준비

- ▶ 투표관리관은 선거일 투표를 시작하기 전에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투표소 설비상황 등을 확인·점검합니다.
- ▶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 이상유무와 기표소 안의 낙서나 표시물 부착 여부를 검사합니다.
- ▶ 그리고 투표함을 1회용 자물쇠로 잠근 다음 특수봉인지에 투표관리관과 정당 또는 후보자별로 신고한 투표참관인 각 1명이 서명한 후 자물쇠 위에 부착하여 봉인합니다.

선거일투표 진행 흐름도



1 투 표 개 시

- 투표관리관이 오전 6시 정각에 투표개시를 선언하면 선거인은 투표소로 입장합니다.
- 투표소 입구에서 투표안내요원에게 진행방향을 안내받아 본인 확인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2 본 인 여 부 확 인

- 선거인은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습니다.
- 선거인명부에서 자신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등이 기재된 서명란에 성명을 기재하거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습니다.

Q. 사전투표를 한 사람이 선거일 투표소에서 또 투표할 수 있나요?

- ▶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으며, 선거인명부에 사전투표 일자와 사전투표소명이 적혀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또한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의 신분증명서 일부가 전자적 이미지로 저장되어 있으므로 필요 시 사전투표 참여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투표용지 수령 및 기표

- 선거인은 투표사무원에게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로 들어갑니다.
- 그리고 한명의 후보자 또는 하나의 정당을 선택하여 기표한 다음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게 투표지를 접어 투표함에 넣고 투표소에서 나갑니다.

Q. 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하지 않고 가지고 갈 경우 어떻게 되나요?

- ▶ 투표지를 가져가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투표함에 투입하고 퇴장하여야 합니다.

4 투 표 마 감

① 투표마감

- 투표는 오후 6시 정각에 마감하며, 오후 6시 이전에 도착하였으나 투표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선거인이 있으면 대기번호표를 나누어 주고 선거인이 모두 투표를 마치면 투표를 마감합니다.
- 투표관리관이 투표마감을 선언한 후에는 선거인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② 투표함 봉쇄 및 특수봉인지 부착

-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 투입구 덮개를 닫고 봉쇄 잠금핀을 끼운 다음 특수봉인지를 부착합니다.
- 그리고 투표관리관과 정당·후보자별로 신고한 투표참관인 각 1명이 특수봉인지에 서명합니다.

③ 투표함 및 투표관계서류 등 인계

- 투표관리관은 투표함과 투표관계서류를 이송차량에 실어서 정당·후보자별로 신고한 투표참관인 각 1명, 호송 경찰과 함께 개표소로 이송합니다.

III 개 표

1. 개표방법

- 우리나라는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 전부를 개표소로 이송하여 개표하는 집중개표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개표방식은 개표사무원 등이 투표지를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여 유효·무효를 결정하는 수작업 개표방식으로 진행합니다.

2. 개표소 설치

- 구·시·군선거위원회는 선거의 수, 선거인 수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개표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육관 등 넓은 장소에 개표소를 설치합니다.
- 통상 구·시·군선거위원회는 1개의 개표소를 설치하지만 개표사무 수행에 필요한 넓은 장소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 구·시·군선거위원회 여건에 따라 2개 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3. 개표소 출입이 가능한 사람

- 개표소에는 선거위원회 위원·직원, 개표사무원, 개표참관인 등 제한된 사람만 출입이 가능하며, 개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선거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지를 잘 보이도록 달아야 합니다.
- ① 구·시·군선거위원회가 개표소에서 개표를 관리합니다.
- ② 구·시·군선거위원회는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를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하여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합니다. 개표사무원은 구·시·군선거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개표 각 과정에서 개표사무를 수행합니다.

- ③ 정당·후보자가 신고한 개표참관인은 우편투표함 및 관내사전 투표함을 구·시·군선관위에서 개표소로 이송하는 과정을 참관하고, 개표소에서 선거일 투표함의 인계·인수과정, 개표진행과정 전반에 대해 참관합니다.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언제든지 촬영할 수 있고, 개표상황을 정당·후보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개표 진행 중에 위법사항을 발견하면 구·시·군선관위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투표지의 효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④ 정당·후보자가 신고한 개표참관인이 아니더라도 선거권자인 일반국민도 구·시·군선관위에 개표참관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자 중에서 개표참관인으로 선정된 일반국민은 개표소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할 수 있습니다.
- ⑤ 누구든지 개표상황을 관람하고자 하는 경우 구·시·군선관위에서 발행하는 개표관람증을 발급받아 개표소 내 지정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 ⑥ 언론사 취재·보도요원은 개표소에서 개표상황을 촬영·취재·보도할 수 있습니다.
- ⑦ 개표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비하고자 의료·소방·전기 등 관련 협조요원이 개표소의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합니다.
- ⑧ 개표소 질서 문란행위가 발생하여 구·시·군선관위 위원장이나 위원이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하는 경우 경찰공무원은 개표소 질서유지를 위해 개표소 내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4. 개표진행

■ 개표 진행 흐름도 ■



1 투표함 등 접수부

- 투표함 등 접수부에서는 투표관리관과 투표참관인이 투표소에서 가지고 온 투표함·투표록·잔여투표용지 등을 확인하고 접수합니다.
- 접수한 투표함은 개표소 내 지정된 장소에 적치하고, 잔여투표용지 등 투표관계서류는 선거가방 등에 다시 넣어 별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합니다.

2 개 함 부

- 개함부에서는 개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 봉인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투표함을 열어 투표지를 개함상 위에 쏘은 후 개함상 전체에 펼칩니다.
- 투표지를 선거별로 구분하여 한쪽방향으로 가지런히 정리하고, 바구니 등 운반용기에 선거별로 담아 투표지분류기운영부로 인계합니다.

3 우 편 투 표 전 담 부

- 우편투표전담부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한 관외사전투표, 재외투표, 거소·선상투표의 회송용봉투를 개봉기로 개봉하고, 봉투안의 투표지를 꺼내 선거·선거구별로 구분하여 정리합니다.

- 정리된 투표지는 투표지분류기운영부로 인계하거나 우편투표 전담부에서 후보자별 유효투표지와 무효투표지로 구분합니다.
- 투표지를 꺼낸 빈 회송용봉투는 별도 상자 등에 넣고 위원장 도장으로 봉인합니다.

4 투표지분류기운영부

- 투표지분류기운영부에서는 개함부에서 정리한 투표지를 투표지 분류기에 투입하여 후보자별 유효투표지와 재확인대상 투표지로 분류합니다.
- 투표지 분류가 완료되면 분류된 결과를 기록한 개표상황표를 출력하여 분류된 투표지와 함께 심사·집계부로 인계합니다.

Q. 투표지분류기란 무엇인가요

- ▶ 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제2항에 따라 구·시·군선관위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계장치로 정확하고 신속한 개표를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 ▶ 투표지분류기는 2002년 제3회 지방선거에서 처음 사용하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투표지분류기는 운용장치(노트북)·투표지분류기·프린터가 일체화되어 있습니다.
- ▶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에 찍힌 기표모양과 위치를 인식하여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하는 단순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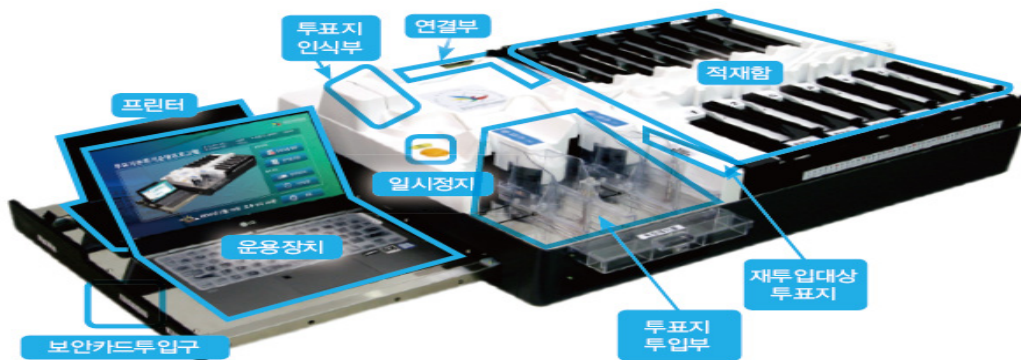
Q. 개표상황표란 무엇인가요

- ▶ 개표상황표는 투표지분류기운영부, 심사·집계부, 개표상황표 확인, 위원검열, 위원장 공표 등 개표의 모든 과정을 기록한 법정서식입니다.
- ▶ 개표소 각 부서에서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심사한 후 후보자별 유효투표수, 무효투표수 등을 기록합니다.
- ▶ 개표상황표는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는 경우 투표지분류기 프린터를 통해 출력하고,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합니다.

Q. 개표상황표 2차원 바코드(QR코드)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있나요

- ▶ 투표지분류기로 개표상황표를 출력하는 경우 개표상황표 우측 상단에 2차원 바코드(QR코드)가 표시됩니다.
- ▶ 2차원 바코드(QR코드)는 총 52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거종류(2), 선거일(8), 구·시·군선거관위(4), 선거구(8), 투표유형(2), 읍·면·동(6), 투표구(9), 기초의원선거구(7), 투표용지교부수(6) 정보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 ▶ 2차원 바코드(QR코드)는 개표결과 보고 시 읍·면·동, 투표구, 투표용지교부수 등의 오입력을 방지하기 위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 ▶ 스캐너를 통해 2차원 바코드(QR코드)를 인식하면 보고시스템에 읍·면·동, 투표구, 투표용지교부수 등 정보가 표출되고 보고담당자가 입력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한 후 후보자별 득표상황, 무효투표수 등을 입력합니다.

투표지분류기 구성



5 심사 · 집계부

- 심사·집계부에서는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후보자별 투표지가 해당 후보자의 유효표가 맞는지, 계수된 투표지 수가 정확한지 여부를 심사계수기를 통해 육안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 재확인대상으로 분류된 투표지는 개표사무원이 투표지를 육안으로 심사하여 후보자별 유효투표지와 무효투표지로 구분합니다.
- 투표지에 대한 심사·집계가 끝나면 후보자별 유효투표지와 무효투표지, 개표상황표를 개표상황표 확인석으로 인계합니다.

Q. 투표지 유·무효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 유효투표지

- 투표용지의 기표란이 아닌 후보자의 기호·소속정당명·성명란에 기표를 하더라도 해당 후보자의 유효표가 됩니다.
- 한 후보자에게 2번 이상 기표하거나 한 후보자란에만 접선되어 기표된 투표지도 유효표입니다.

▶ 무효투표지

-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하지 않거나 2이상의 후보자에게 걸쳐 기표되거나 2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하면 무효표가 됩니다.
-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가 아닌 다른 용구로 기표하거나, 투표지에 문자·물형을 기입하면 무효표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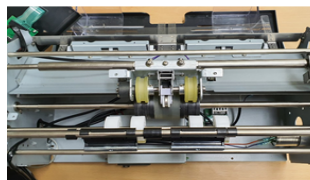
Q. 투표지 심사계수기란 무엇인가요

- ▶ 투표지 심사계수기는 투표지 심사와 계수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 ▶ 시중의 일반 계수기와 달리 계수 속도가 느려 계수기를 통과하는 투표지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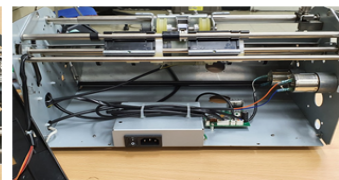
■ 심사계수기 구성 ■



상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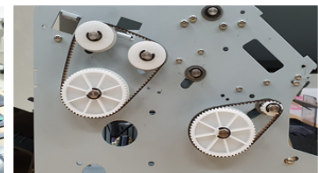
후면부



측면부(우)



측면부(좌)



6 개 표 상 황 표 확 인 석

- 개표상황표 확인석에서는 개표상황표에 기재된 수의 합계오류·서명 누락 등 작성의 적정여부를 확인합니다.
- 확인된 개표상황표는 투표지와 함께 위원검열석으로 인계합니다.

7 위 원 검 열 석

- 위원검열석에서는 구·시·군선관위 위원이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 투표수 등을 검열하고 개표상황표 위원 서명칸에 성명을 기재 하거나 도장을 날인합니다.
- 위원검열을 마친 투표지와 개표상황표는 위원장에게 인계합니다.

8 개 표 결 과 공 표 · 보 고 · 공 개

- 위원장은 개표상황표에 의해 개표결과를 공표합니다.
- 개표결과 공표 후 보고담당자가 개표보고시스템을 통해 개표결과를 보고하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개표결과가 공개되며, 동일한 자료가 각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제공됩니다.
- 보고가 완료된 개표상황표 사본은 개표소 내에 게시하고, 개표참관인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공합니다.

※ 구·시·군선관위는 개표상황표를 시·도선관위에 팩스로 송부하고, 시·도 선관위는 개표상황표와 입력된 개표결과를 비교하여 보고된 개표결과의 정확성을 확인합니다. 또한, 개표참관인도 개표소에서 확인한 개표결과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개표결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정 리 부

- 정리부에서는 개표가 끝난 투표지를 보관봉투 또는 보관상자 등에 넣어 봉합하고 위원장 도장으로 봉인합니다.
- 개표가 종료되면 투표지, 빈 회송용봉투, 투표관계서류 등을 구·시·군선관위로 이송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5. 투표지 보관·폐기

- 구·시·군선관위는 투표지, 빈 회송용봉투, 투표관계서류 등을 해당 선거 당선인의 임기중 보관합니다.
- 다만, 해당 선거에 대한 재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재송이 종료된 경우에는 구·시·군선관위의 결정으로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보존기간을 단축하더라도 재송 제기기한 만료일로부터 1월 이후, 재송의 종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후에 폐기할 수 있습니다.

Q. 선거나 당선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 국회의원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후보자·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선거인은 선거무효소송은 제기할 수 있으나 당선무효소송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Q. 선거·당선소송 제기 시 증거보전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 후보자 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에 투표함·투표지·투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선거인은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증거보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Ⅱ

사전투표 · 개표 통신망 보안

I

사전투표 보안

1. 명부단말기

- 비인가 통신매체(블루투스, Wi-Fi, 적외선, 모뎀 등) 차단
- 비인가 저장매체(CD/DVD, SD카드, 외장HDD, USB 등) 차단
- 인가된 보안 USB를 통한 사용자 인증
- 비인가 실행파일 하드디스크 생성(Create) 차단
- 공유폴더 · 네트워크 드라이브 생성 및 접속 차단
- 화이트리스트 기반 프로세스 실행 및 네트워크 접속 통제

2. 유 · 무선 통신장비

- 표준 규격 준수(KS X 3264,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8-23호)
 - ※ 조달청 공개경쟁 입찰로 선정된 사업자가 국가 표준에 따라 제작한 국산장비
- 무선랜(Wi-Fi) 모듈 및 기능 제거
- 통신 장애 대비 유선 및 무선(LTE) 통신망 이중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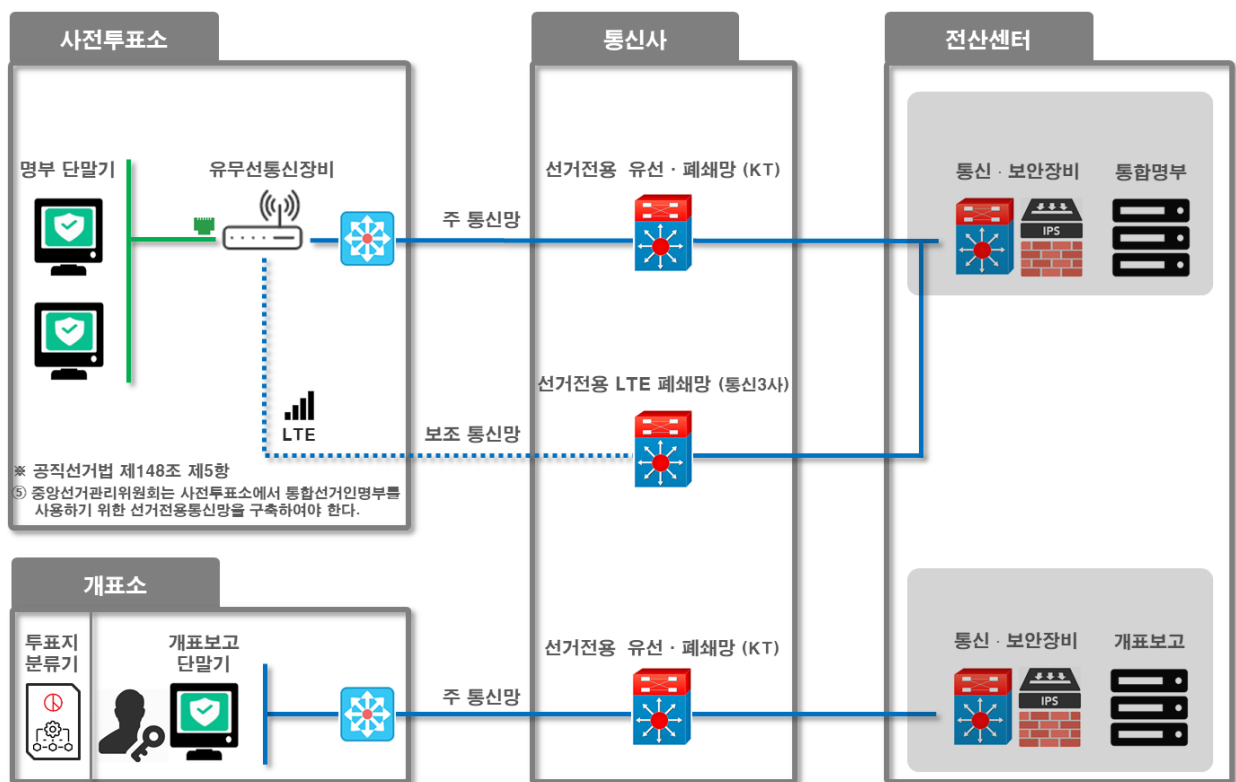
3. 전산센터

- 선거관리위원회 자체 전산센터 운영
 - ※ 헌법기관 전산센터 현황 : 대법원(경기 성남시), 헌법재판소(서울 종로구)
- 보안 폐쇄망 외부통신 차단
- 24시간 365일 통합보안관제

4. 통합명부시스템

- 전산센터 내 별도 폐쇄망에서 운영
- 통합명부 데이터베이스 접근통제 및 암호화
- GPKI 인증서 기반의 통합명부시스템 접속 통제
-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 2018
- 국제표준정보보호(ISO27001) 인증 - 2019

■ 선거전용통신망 구성도 ■



II 투 · 개표보고시스템 보안

- (투표지분류기) 외부통신 불가한 독립형 시스템 - 승인된 관리자만 운영
- (투 · 개표보고) 통신사 상용망과 분리된 선거전용통신·폐쇄망 구성

Ⅲ

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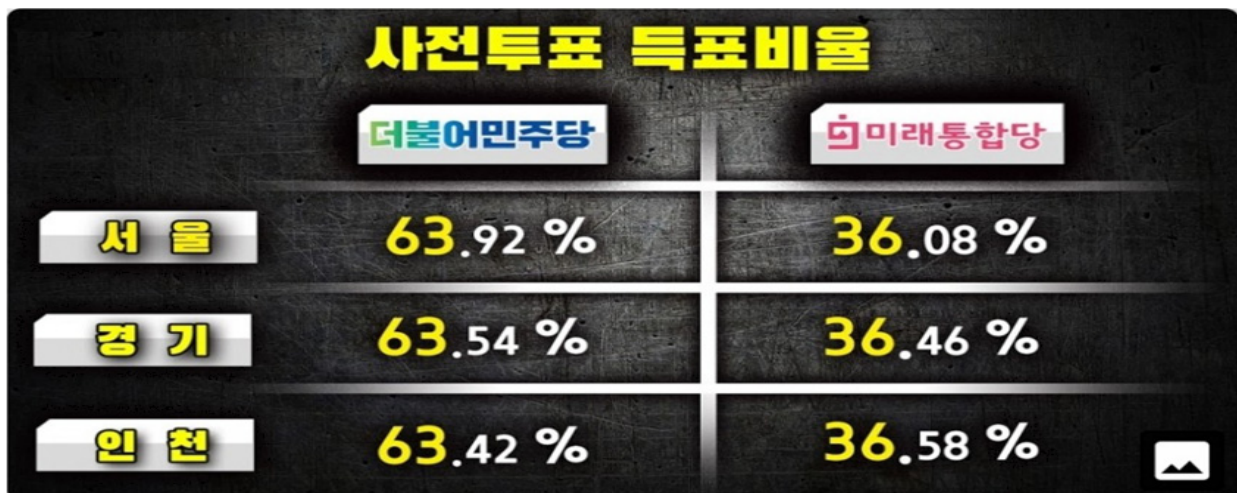
I 유권자의 표심인 선거통계에 대한 의혹제기에 대해

- 선거결과는 유권자 표심이 집합된 것으로 이에 대한 자의적 해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모든 개표과정은 참관인과 국민에게 공개되고 있으며, 선관위는 투표결과를 단순 집계할 뿐 통계조작은 불가능합니다.
- 이러한 의혹들은 소송 등을 통해 실물 투표지를 검증함으로써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자 간 사전투표 득표비율 63:36

주요내용

- ▶ 서울·인천·경기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미래통합당 후보자의 평균 사전투표 득표비율이 63%:36%로 일치



사실확인

- ▶ 서울·인천·경기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자 간 사전투표 득표비율을 소수점을 버리고 정수 부분만으로 비교할 경우 63%:36%로 일치합니다.

- ▶ 그러나 소수점을 포함한 실제 득표율은 서울 63.95:36.05, 인천 63.43:36.57, 경기 63.58:36.42로 엄밀히 말하자면 비율이 일치한다고 할 수 없으며, 모든 후보자를 포함하여 계산할 경우 결과가 모두 달라집니다.

시 도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기타
서울	63.95 : 36.05	61.31 : 34.55 : 4.14
인천	63.43 : 36.57	58.82 : 33.91 : 7.27
경기	63.58 : 36.42	60.68 : 34.76 : 4.56

- ▶ 굳이 의혹을 제기하는 논리대로 소수점 이하를 버리고 정수 부분만으로 비교 하더라도 전체 지역구 253개 중 17개 지역구(6.7%)에서만 63:36의 비율이 나타나며 해당 지역구도 모든 후보자를 포함하여 계산할 경우 결과가 모두 달라집니다.

시도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기타	
		실 제	정 수	실 제	정 수
서울	동대문갑	63.63 : 36.37	63 : 36	60.32 : 34.47 : 5.21	60 : 34 : 5
서울	동대문을	63.21 : 36.79	63 : 36	62.25 : 36.23 : 1.52	62 : 36 : 1
서울	서대문갑	63.48 : 36.52	63 : 36	60.42 : 34.76 : 4.82	60 : 34 : 4
서울	관악을	63.87 : 36.13	63 : 36	61.41 : 34.74 : 3.85	61 : 34 : 3
서울	강동을	63.96 : 36.04	63 : 36	62.06 : 34.97 : 2.97	62 : 34 : 2
인천	연수갑	63.50 : 36.50	63 : 36	62.97 : 36.20 : 0.82	62 : 36 : 0
인천	부평갑	63.53 : 36.47	63 : 36	62.69 : 35.99 : 1.32	62 : 35 : 1
대전	서구갑	63.03 : 36.97	63 : 36	62.11 : 36.43 : 1.47	62 : 36 : 1
경기	안양동안을	63.25 : 36.75	63 : 36	61.04 : 35.46 : 3.50	61 : 35 : 3
경기	광명갑	63.77 : 36.23	63 : 36	54.75 : 31.11 : 14.14	54 : 31 : 14
경기	안산단원갑	63.01 : 36.99	63 : 36	61.34 : 36.01 : 2.65	61 : 36 : 2
경기	고양정	63.49 : 36.51	63 : 36	62.59 : 35.99 : 1.42	62 : 35 : 1
경기	용인정	63.64 : 36.36	63 : 36	62.03 : 35.44 : 2.53	62 : 35 : 2
경기	파주을	63.30 : 36.70	63 : 36	62.48 : 36.23 : 1.29	62 : 36 : 1
강원	원주을	63.20 : 36.80	63 : 36	61.63 : 35.89 : 2.48	61 : 35 : 2
제주	제주갑	63.11 : 36.89	63 : 36	54.31 : 31.75 : 13.94	54 : 31 : 13
제주	제주을	63.55 : 36.45	63 : 36	61.30 : 35.16 : 3.54	61 : 35 : 3

- ▶ 또한, 63:36 비율 뿐만 아니라 67:32의 비율도 17개 지역구에서, 61:38의 비율도 14개 지역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득표비율	지역구수	득표비율	지역구수	득표비율	지역구수	득표비율	지역구수
21 : 78	1	43 : 56	2	56 : 43	4	69 : 30	4
25 : 74	2	44 : 55	2	57 : 42	6	70 : 29	5
26 : 73	2	45 : 54	3	58 : 41	10	71 : 28	1
30 : 69	1	46 : 53	3	59 : 40	6	72 : 27	3
31 : 68	1	47 : 52	3	60 : 39	5	73 : 26	1
32 : 67	2	48 : 51	6	61 : 38	14	74 : 25	1
33 : 66	1	49 : 50	2	62 : 37	8	76 : 23	1
35 : 64	2	50 : 49	5	63 : 36	17	82 : 17	1
37 : 62	4	51 : 48	8	64 : 35	9	92 : 7	2
38 : 61	1	52 : 47	4	65 : 34	12	94 : 5	2
39 : 60	3	53 : 46	7	66 : 33	8	95 : 4	3
40 : 59	3	54 : 45	5	67 : 32	17	96 : 3	4
42 : 57	3	55 : 44	7	68 : 31	8	97 : 2	1

- ▶ 과거 선거의 개표결과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2017년 실시한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사전 투표 시도별 득표 비율은 서울 73:26, 인천 71:28, 경기 72:27이었으며, 구·시·군별 득표 비율은 75:24가 15개 구·시·군에서 나왔습니다.

득표비율	지역구수	득표비율	지역구수	득표비율	지역구수	득표비율	지역구수
20 : 79	1	42 : 57	5	59 : 40	5	74 : 25	8
23 : 76	1	43 : 56	2	60 : 39	4	75 : 24	15
26 : 73	1	44 : 55	6	61 : 38	9	76 : 23	6
28 : 71	1	45 : 54	1	62 : 37	6	77 : 22	2
30 : 69	2	46 : 53	3	63 : 36	5	78 : 21	1
31 : 68	1	48 : 51	3	64 : 35	8	79 : 20	3
32 : 67	3	49 : 50	2	65 : 34	8	81 : 18	1
33 : 66	1	51 : 48	2	66 : 33	3	91 : 8	1
34 : 65	1	52 : 47	3	67 : 32	7	94 : 5	5
35 : 64	2	53 : 46	2	68 : 31	10	95 : 4	14
36 : 63	2	54 : 45	1	69 : 30	3	96 : 3	13
37 : 62	1	55 : 44	1	70 : 29	11	97 : 2	9
38 : 61	2	56 : 43	2	71 : 28	9		
40 : 59	2	57 : 42	6	72 : 27	11		
41 : 58	1	58 : 41	1	73 : 26	11		

- ▶ 따라서 의혹을 제기하는 63:36의 비율은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수치라고 할 수 없으며 이를 부정선거의 증거로 볼 수 없습니다.

② 일부 선거구에서 정당의 관내득표수 대비 관외득표수 동일

주요내용

- ▶ 일부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 각각의 관내사전투표득표수 대비 관외사전투표득표수가 특정 상수로 동일
(예시) 인천 연수구를

소속 정당명	득 표 수		관외사전 관내사전
	관내사전	관외사전	
더불어민주당	15,797	6,185	0.39153
미래통합당	11,335	4,460	0.39347

인천 연수구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미래통합당 민경욱	정의당 이정미
관외사전	6,185	4,460	2,073
관내사전	15,797	11,335	5,296
정일영	관외사전 / 관내사전 = 0.391530		
민경욱	관외사전 / 관내사전 = 0.393471		
이정미	관외사전 / 관내사전 = 0.391427		

사실확인

- ▶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의 관내사전투표득표수 대비 관외사전투표득표수의 비율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일치하는 지역구는 총 253개 중 11개 (4.3%)이며 각 지역구별 상수는 0.25 ~ 0.39로 서로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시도	선 거 구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실제 비율		소수 셋째자리 절삭	
		관내	관외	관내	관외	민주당	통합당	더민주	통합당
서울	종로구	24,093	6,472	11,777	3,169	0.269	0.269	0.26	0.26
서울	용산구	24,432	7,555	17,699	5,346	0.309	0.302	0.30	0.30
서울	송파구병	26,646	8,377	15,684	4,992	0.314	0.318	0.31	0.31
인천	연수구를	15,797	6,185	11,335	4,460	0.392	0.393	0.39	0.39
인천	남동구갑	22,911	8,059	13,959	4,966	0.352	0.356	0.35	0.35
인천	서구갑	25,722	6,625	16,177	4,069	0.258	0.252	0.25	0.25
인천	서구를	26,671	7,833	12,668	3,690	0.294	0.291	0.29	0.29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26,790	7,530	19,087	5,360	0.281	0.281	0.28	0.28
경기	성남시분당구를	23,826	7,008	15,208	4,488	0.294	0.295	0.29	0.29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12,703	3,533	7,462	2,070	0.278	0.277	0.27	0.27
제주	서귀포시	19,403	5,304	11,771	3,278	0.273	0.278	0.27	0.27

- ▶ 2016년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관내사전투표득표수 대비 관외사전투표득표수 비율이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같은 지역구가 서울 송파갑(0.44), 대전 유성구갑(0.65), 충남 논산계룡금산(0.47) 3곳이 있었습니다.
- ▶ 따라서 의혹을 제기한 관내사전투표득표수 대비 관외사전투표득표수의 비율이 동일한 상수라는 것은 극히 일부 지역구에서 나타난 현상이며, 과거 선거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었음을 고려할 때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부정선거의 증거로 볼 수 없습니다.

③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선거일 투표 득표율보다 10%p 높음

주요내용

- ▶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선거일 투표 득표율보다 10%p 정도 높음.

더불어민주당 득표율		당 일	사 전
	총 로 이낙연	50.6%	66.4%
	광진을 고민정	44.8%	57.8%
	동작을 이수진	49.8%	60.0%
	강동갑 진선미	46.4%	58.9%

사실확인

- ▶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선거일투표 득표율보다 약 10%p (9.5%p ~ 10.5%p) 높게 나타난 지역구는 총 34개입니다.
- ▶ 이 34개 지역구의 당선인 현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21명, 미래통합당 12명, 무소속 1명이므로 특정 정당에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일 투표 득표율 대비 사전투표 득표율 차이가 가장 적은 곳은 0.5%p(전북 군산)이며, 가장 큰 곳은 18.3%p(충남 당진)로 전국적으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 ▶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투표방법별 득표율이 10%p 차이가 난다는 주장은 일부 선거구에 국한되는 현상에 불과하므로 조작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4) 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의 개표결과 바뀜

주장내용

전주시완산구 삼천3동 비례대표 사전투표의 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자수 10매 차이 방송 이후 선거통계시스템의 선거결과가 바꿨다고 주장

사실확인

- ▶ 가로세로연구소가 ‘5. 31. 방송전, 방송후’라며 비교한 5개 동의 관내사전투표 개표결과는 비례대표와 지역구 개표결과를 잘못 비교한 것입니다.
- ▶ 개표결과를 변경한 사실이 없으며, 중앙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투표구별 개표 결과 자료(4. 24.) 및 선거통계시스템에서 사실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구 분	비례대표		지역구	
	선거인수	투표수	선거인수	투표수
전주시완산구 삼천3동	4,674	4,684	4,674	4,674
평택시 서정동	3,526	3,529	3,526	3,515
서울 강남구 논현1동	2,990	2,992	2,990	2,990
고양시덕양구 행신2동	5,365	5,368	5,365	5,365
서울 서대문구 홍은제2동	4,068	4,071	4,068	4,067

Ⅱ 선거절차의 이해부족에서 발생한 의혹제기에 대해

- 모든 투·개표 과정은 정당·후보자 등 이해 당사자 18만 여명이 직접 참여·참관함으로써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 다만, 투표방법이 다양(선거일, 사전, 거소, 선상, 재외)하고 이에 따라 개표절차도 복잡하며, 투·개표사무에 공무원·일반시민 등 30만 여명이 짧은 교육을 받고 바로 투입되기 때문에 다소 업무처리가 미숙한 점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 개표에 사용되는 선거장비는 실물 투표지 개표의 효율성,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기계장치입니다.
- 따라서, 선거절차에 대한 의혹은 법 규정과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사전투표

① 사전투표용지 2차원 바코드(QR코드) 사용은 선거법 위반

주요내용

- ▶ 「공직선거법」 제151조제6항의 ‘막대 모양’ 바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2차원 바코드(QR코드)를 사용한 것은 법 위반



사실확인

-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정보통신용어사전에 따르면 QR코드는 2차원 바코드의 한 종류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 ▶ 2차원 바코드(QR코드)는 사각형의 가로세로 격자무늬로 이루어져 있으며 1차원 바코드(선형)보다 진일보한 바코드로서 막대모양의 바코드에 해당하기 때문에 2차원 바코드(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 ▶ 2차원 바코드(QR코드)는 1차원 바코드에 비해 차지하는 면적이 적고, 복원력이 우수해서 투표용지가 일부 훼손되더라도 인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 또한, 1차원 바코드는 막대모양이 숫자 1처럼 보여서 특정 정당·후보자 기호가 연상된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2014년 전국적으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된 때부터 사전투표용지에 2차원 바코드(QR코드)를 사용한 것입니다.

2 차원 바코드(QR코드)에 국민 500만 명의 개인정보 수록

주요내용

- ▶ 사전투표용지 2차원 바코드(QR코드)에 국민 5백만 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유권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비밀 투표 침해

1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시스템명	개인정보파일 처리내역	실시사유
선거관리시스템	○ 수집대상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록기준지, 전과, 병역, 학력, 납세, 교육경력, 재산 ○ 보유예정 개인정보 수 : 약 500만명	○ 개인정보 100만 이상 처리 ○ 고유식별정보 5만 이상 처리
통합정부시스템	○ 수집대상 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번호 끝3자리, 손도장 또는 서명, 주소 ○ 보유예정 개인정보 수 : 약 4,200만명(전국기준)	○ 개인정보 100만 이상 처리 ○ 고유식별정보 5만 이상 처리
재외선거관리시스템 (영구정부시스템 포함)	○ 수집대상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등록기준지, 최종주소지, 국외거주 주소, 선거권결격정보 ○ 보유 개인정보 수 : 약 50만명	○ 고유식별정보 5만 이상 처리
재외선거 인터넷 신고·신청시스템 (재외선거 명부열람서비스 포함)	○ 수집대상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등록기준지, 최종주소지, 국외거주 주소, 선거권결격정보 ○ 보유 개인정보 수 : 약 50만명	○ 고유식별정보 5만 이상 처리
온라인투표시스템	○ 수집대상 정보 : 관리자 성명, 소속, 연락처, 이메일, 직위, 선거인성명, 소속, 이메일,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등	○ 향후 누적 개인정보 처리 확대 대비

사실확인

- ▶ 「공직선거법」 제151조제6항에 따라 사전투표용지에 표시된 2차원 바코드(QR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선관위명, 일련번호가 총 31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을 뿐 선거인의 개인정보는 전혀 없습니다.

<2차원 바코드(QR코드) 예시 : 202004150002021101011101000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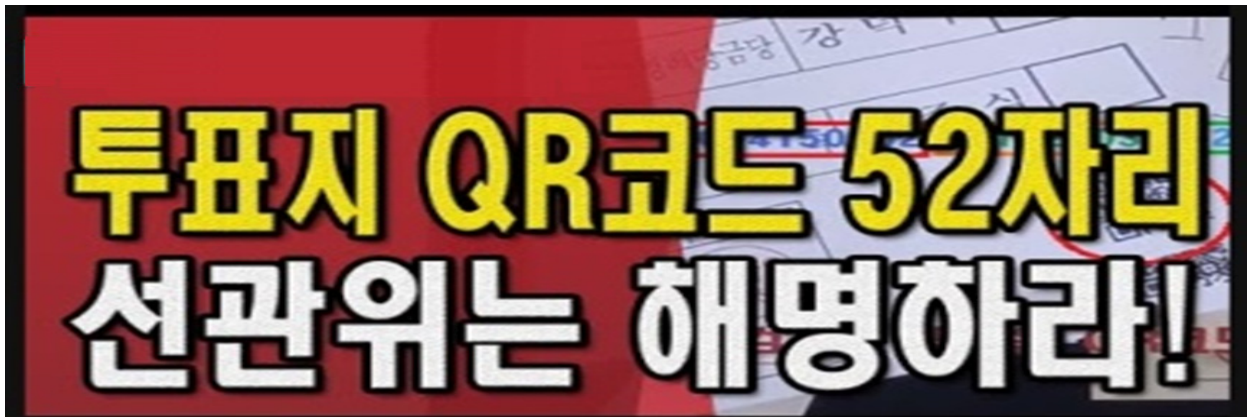
202004150002	02110101	1101	0000001
선거명(12)	선거구명(8)	관할 선관위명(4)	일련번호(7)

- ▶ 2차원 바코드(QR코드)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우리 위원회의 '2020년도 선거정보시스템 통합위탁운영 사업' 제안요청서 일부입니다.
- ▶ 우리 위원회가 선거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선거정보시스템에는 후보자의 전과·병역·학력 등 정보와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개인정보가 입력되기 때문에 「개인 정보 보호법」 제33조 및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과 시기를 안내한 자료인 것입니다.
- ▶ 따라서 사전투표용지에 표시된 2차원 바코드(QR코드)와 전혀 상관없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2차원 바코드(QR코드)에 선거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③ 2차원 바코드(QR코드)에 52자리 암호화된 코드 존재

주요내용

- ▶ 2차원 바코드(QR코드) 안에 선관위가 설명하는 31자리 숫자 정보 외에 추가 코드(총 52자리)가 포함되었다는 주장



사실확인

- ▶ 「공직선거법」 제151조제6항에 따라 사전투표용지에 표시된 2차원 바코드(QR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선관위명, 일련번호가 총 31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을 뿐 그 밖의 정보는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 ▶ 다만, 우리 위원회가 개표소에서 작성하는 개표상황표 우측 상단에 인쇄된 2차원 바코드(QR코드)는 52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표상황표 2차원 바코드(QR코드) 구성〉

구분	선거종류	선거일	구·시·군 선거구	선거구	투표유형	읍·면·동	투표구	기초의원 선거구	투표용지 교부수
자리수	2	8	4	8	2	6	9	7	6

- ▶ 개표상황표에 인쇄된 2차원 바코드(QR코드)는 개표상황을 보고할 때 기본정보(선거명, 선거구명, 읍·면·동명, 투표구명, 투표용지교부수 등)를 잘못 입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6년 제20대 국선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전혀 다른 2차원 바코드(QR코드)를 두고 사전투표용지의 2차원 바코드(QR코드)에 법에 규정된 정보 외의 다른 정보가 포함되었다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4 인구수보다 투표자수가 더 많은 유령표

주장내용

파주시을선거구 진동면 관내사전투표(지역구) 개표결과, 진동면 인구수 159명(20년 4월 기준, 파주시 인구통계) 보다 투표자수(201명)가 42명 더 많은 유령표 발생

사실확인

- ▶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자신의 주소지 밖에서도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인의 주소지 기준에 따라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으로 구분됩니다.
 - ▶ 선거인이 자신의 주소지 구·시·군(구·시·군안에서 2 이상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선거구 기준)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경우 모두 관내사전투표로 분류되며, 실제 사전투표를 한 읍·면·동의 관내사전투표자수에 포함됩니다.
 - ▶ 파주시 진동면 관내사전투표자수(114명)는 파주시을선거구 내 11개 읍·면·동 지역 선거인 중 진동면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수치이며, 진동면에 주소를 둔 사전투표자의 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 ▶ 또한, 파주시 진동면 개표결과 선거인수(201명)는 선거일 진동면투표소 선거인수(87명)에 관내사전투표자수(114명)를 합한 수치입니다.
 - ▶ 선거통계시스템 개표결과 인구수보다 선거인수가 많은 이유는 관내 및 관외 선거인 구분에 따른 결과이므로 유령표가 발생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 전국적으로 인구수 대비 선거인수(관내사전투표자수 + 선거일 선거인수)가 많은 읍·면·동수는 48개임.

5 화성시갑 봉담읍 관내사전투표자수가 0명 의혹

주요내용

- ▶ 화성시갑선거구인 봉담읍의 관내사전투표자수가 0명이라고 의혹 제기

사실확인

-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은 총 16개의 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을 하면서 그 중 10개의 리(1투·2투)는 화성시갑선거구로, 6개의 리(3투~18투)는 화성시병선거구로 분할하여 획정하였습니다.
- ▶ 이로 인해 봉담읍은 2개의 선거구를 가지게 되었지만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에 따라 사전투표소는 1개소만 설치된 상황이었습니다.
- ▶ 한편, 「공직선거법」 제158조제5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6조제3항은 하나의 구·시·군선관위 관할구역 안에 2 이상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관내선거인의 범위는 국회의원지역구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봉담읍이 속해 있는 화성시갑선거구와 화성시병선거구 중 어느 하나의 선거구를 선택하여 관내선거인으로 구분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선거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선거인수가 많은 화성시병선거구에 해당하는 봉담읍 선거인은 관내사전투표 대상자로, 화성시갑선거구에 해당하는 봉담읍 선거인은 모두 관외사전투표 대상자로 구분하였습니다.
- ▶ 따라서 화성시갑선거구 봉담읍의 선거인 중 사전투표를 한 경우 관외사전투표로 투표하였기 때문에 관내사전투표자가 없는 것입니다.

6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전투표자수

주요내용

부천시 신중동 관내 사전투표(18,210)와 부천시 상동 관내 사전투표(12,959)의 투표 1회당 4.74초~6.66초 소요되어 실제 유권자가 투표하고 나오기 불가능

사실확인

- ▶ 2019. 7. 1.자로 부천시 광역동 전환에 따라 기존 36개 사전투표소가 10개로 축소되어 최대한 넓은 장소를 확보하여 사전투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 신중동 : 부천시청 3층 소통마당(414㎡), 상동 : 복사골문화센터 2층 갤러리(356㎡)

- ▶ 해당 주장은 사전투표장비 1대 운영 시 산출한 결과이며, 부천시는 관내사전투표를 위해 신중동 15대, 상동 11대를 각각 운영하여 실제 장비수로 산출하면 1분당 0.82~0.84명, 1인당 1분 11초~1분 13초 정도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 투표용지 기표는 기표대에서 하는 것이며 설치된 1개의 투표함에 투표지를 투입하는 시간은 1~2초면 충분하므로 투표함이 여러 개가 아니어서 투표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 관내사전투표 기표대 설치 수 : 신중동 19개, 상동 16개

7 관외사전투표함을 CCTV가 없는 헬스장에 보관

주요내용

- ▶ CCTV가 없는 헬스장에 관외사전투표함을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



사실확인

- ▶ 관외사전투표함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라고 주장하는 사진은 경기도 구리시선관위 개표소 안의 체력단력실이며, 파란색 가방은 투표소로부터 인계받은 투표록 등 선거관계서류가 들어 있는 선거가방입니다.
- ▶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감한 다음 투표록 등 선거관계서류 일체는 투표관리관이 선거가방 등에 담아 투표함과 함께 개표소로 이송합니다.
- ▶ 개표소에서는 정확한 개표를 위해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인계받은 투표록 등 선거관계서류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관계서류가 들어있는 선거가방 등은 개표소 내 별도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 참고로 관외사전투표함은 플라스틱으로 된 투표함을 사용하였다가 사전투표 마감 후 투표함에서 회송용봉투를 꺼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해당 구·시·군 선관위가 우체국으로부터 배달받으면 우편투표함에 투입하여 보관합니다.
- ▶ 그리고 관내사전투표함은 사진에 보이는 선거가방과 유사한 색상과 재질로 되어 있으나 상단부분이 플라스틱 재질의 투표함 뚜껑이 부착되어 있으므로 확연히 구분됩니다.
- ▶ 따라서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완전히 다릅니다.

8 관외사전투표지를 파쇄한 흔적 발견

주요내용

- ▶ 여주시선관위가 우편으로 회송된 관외사전투표 봉투를 파쇄하고 다른 봉투로 바꿔치기했다는 주장



사실확인

- ▶ 선관위는 선거를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 투·개표 관련 사전교육과 장비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 여주시선관위는 이번 선거를 대비하여 회송용봉투 접수기 점검을 위해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였고, 모의개표를 실시하면서 색지에 출력한 유효투표집계전을 사용한 다음 파쇄하여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것입니다.
- ▶ 여주시선관위는 우체국으로부터 관외사전투표 회송용봉투 4,819통을 배달받아 접수하여 우편투표함에 투입하였고, 개표소에서 우편투표함을 개함하여 4,819통 전부 개표하였습니다.

- ▶ 회송용봉투는 개별적으로 부여된 등기번호를 통해 이동경로를 추적할 수 있고 선관위는 우체국으로부터 회송용봉투를 배달받아 바코드를 통해 이상유무 등을 확인한 다음 접수하고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우편투표함에 투입하기 때문에 투표지를 바꿔치기할 수 없습니다.

9 우체국에서 관외사전투표 회송용봉투 부실 관리

주요내용

- ▶ 선관위에서 사전투표 회송용봉투를 우체국으로 인계한 다음 배달 과정에 참관인·경찰공무원이 동반하지 않아 투표지 바꿔치기 가능

사실확인

- ▶ 「공직선거법」 제158조제6항제1호에 따라 회송용봉투는 사전투표마감시각 후 관할 우체국으로 인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 ▶ 우체국은 전국 3,508개의 사전투표소로부터 2일에 걸쳐 사전투표 회송용봉투를 인계받아 분류한 다음 250개의 구·시·군선관위로 5일 동안 안전하고 정확하게 배달하여야 합니다.
- ▶ 이러한 회송용봉투의 배달경로와 배달기간을 고려할 때 투표참관인이나 경찰공무원이 동반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 ▶ 또한, 회송용봉투는 개별적으로 부여된 등기번호를 통해 이동경로를 추적할 수 있고 선관위는 우체국으로부터 회송용봉투를 배달받아 이상유무 등을 확인한 다음 바코드를 이용하여 접수하고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우편투표함에 투입하기 때문에 투표지를 바꿔치기할 수 없습니다.

10 사전투표함 보관상황 관제모니터의 ‘연결이 해제되었습니다’ 등 발생

주요내용

- ▶ 동작구선관위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상황 관제모니터 화면에서 사용자로그의 “연결이 해제되었습니다.”, “장치에서 연결을 해제하였습니다.”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에 대하여 CCTV 조작 등 의혹 제기

사실확인

- ▶ 동작구선관위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장소를 녹화하는 CCTV는 녹화된 영상을 확인해 본 결과 보관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작동되었습니다.
- ▶ 다만, 관제모니터 화면에 사용자로그의 “연결이 해제되었습니다.”, “장치에서 연결을 해제하였습니다.”라는 메시지가 표출된 것은 CCTV의 영상을 투표함 보관상황 관제용 조회프로그램으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일시적(5~6초 정도)으로 통신에러가 발생한 것이 원인이라고 추정됩니다.
- ▶ 사전투표소 보관장소의 CCTV를 조작하였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11 선관위 직원이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서 특수봉인지 교체

주요내용

- ▶ 남양주선관위 직원이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서 특수봉인지를 전달받고 의문의 여성이 동 장소에서 사전투표함에 부착된 특수봉인지에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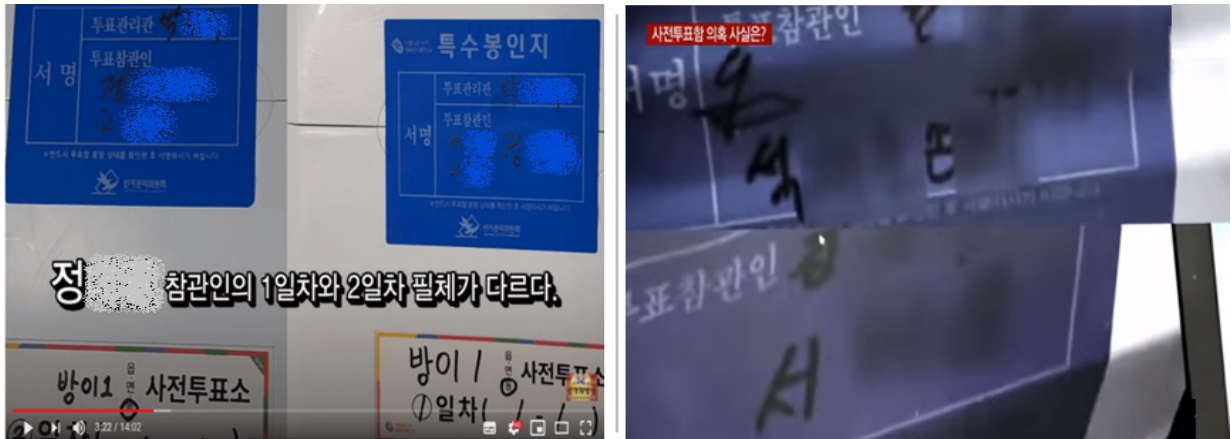
사실확인

- ▶ 일부 시민단체에서 창문을 통한 외부 침입 가능성을 제기한 사실이 있어 남양주 선관위 사무국장은 4. 10. 18:35경 관내사전투표함을 보관장소에 적치하던 중에 본인과 정당추천위원이 서명한 봉인지를 정당추천위원에게 전달하여 창문을 봉인한 것입니다.
- ▶ 또한, 사전투표함 인계 시 동반한 다산2동 사전투표참관인(○○당 추천, 오후 참관)이 자신도 사전투표함 앞·뒷쪽 특수봉인지에 서명하기를 희망하여 정당 추천위원 참관 하에 서명한 것입니다.

12 송파구 사전투표참관인의 특수봉인지 서명이 본인 필체가 아니라는 주장

주요내용

- ▶ 송파구 방이1동사전투표소 투표참관인이었던 정모씨가 본인이 투표참관 당시 투표함 봉인지에 서명한 것과 개표소에서 확인한 해당 사전투표함의 봉인지 서명이 서로 다르다며 투표함 바꿔치기 주장



사실확인

- ▶ 방이1동 사전투표소 투표참관인인 정○○씨는 사전투표소에서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관내사전투표함을 이송하는 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 ▶ 정○○씨는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함 봉인지 서명에 참여하였고, 투표용지 발급기 출력부분의 봉인지에도 서명하였는데 모든 서명을 확인·대조한 결과 모두 정○○씨의 필체로 확인되었습니다.
- ▶ 그럼에도 정○○씨는 유튜브 등에서 봉인지에 있는 서명이 자신의 필체와 다르다고 주장하여 우리 위원회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정○○씨를 조사하였습니다.
- ▶ 그 결과 정○○씨는 본인의 서명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2개의 특수봉인지 서명이 본인의 서명이 맞다고 진술하였으며, 조사 과정에서 김○○가 정씨로 하여금 허위주장을 하도록 선동함으로써 부당하게 개표에 간섭한 사실이 밝혀져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13 양천구선관위 앞 관내사전투표함의 훼손된 특수봉인지 발견

주요내용

- ▶ 서울 양천구 신정4동 관내사전투표함 특수봉인지가 양천구선관위 청사 앞에서 발견



사실확인

- ▶ 서울 양천구 신정4동사전투표소 투표관리관이 투표진행 중 내부에 쏠려있는 투표지를 고르게 하기 위해 투표함을 흔들며 정리하면서 부착되어 있던 봉인지 일부가 훼손되었습니다.
- ▶ 투표관리관은 투표마감시각 후 모든 투표참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투표함의 양쪽에 부착된 봉인지 2매를 교체하였고, 교체하기 전 훼손된 봉인지를 회수·처리하면서 1매가 투표관리관 신발 바닥에 붙어 투표함 이송과정에서 양천구 선관위 청사까지 오게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 ▶ 투표함 봉합·봉인은 정상적으로 되어 있으며, 투표참관인이 투표함 이송 및 보관 과정에 모두 참여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였습니다.
- ▶ 향후 봉인지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투표관리관 교육을 실시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4 남양주선관위 물류센터에서 특수봉인지 등 무단기 발견

주요내용

- ▶ 남양주 물류센터 앞에서 특수봉인지, 기표용구 등이 담긴 종량제봉투 발견



사실확인

- ▶ 종량제봉투가 발견된 물류센터는 남양주선관위의 물품보관 창고로 개표 완료 후 빈 투표함 등 선거관련 물품을 보관하였습니다.
- ▶ 남양주선관위는 물품보관 창고에서 선거에 사용한 투표함을 정리하면서 투표함 투입구 등에 일부 남아 있던 특수봉인지를 제거하였고, 제거된 특수봉인지와 선거일 투표마감 후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인계받은 기표용구, 스탬프, 안면보호구, 방습제 등 1회용 물품을 종량제봉투에 함께 담아 물류센터 내 폐기물 처리 장소에 내놓은 것입니다.

투표용지

15 동작구선관위 투표용지 파쇄 의혹

주요내용

- ▶ 공정선거국민연대가 동작구선관위 앞에서 남성 4명이 파쇄된 투표용지가 들어 있는 쓰레기봉투를 버리는 장면을 촬영하였는데 이는 투표지를 바꿔치기한 증거라고 주장



사실확인

- ▶ 동작구선관위와 영등포구선관위는 같은 건물을 청사로 사용하고 있으며, 공정 선거국민연대가 촬영한 사진은 영등포구선관위 선거사무보조요원과 사회복지요원이 쓰레기봉투 등을 버리는 모습입니다.
- ▶ 동작구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 모의시험을 하면서 사용했던 투표용지를 파쇄하여 청사건물 1층에 보관해 두었는데 영등포구선관위 사회복지요원 등이 쓰레기 등을 버리면서 파쇄된 모의시험용 투표용지를 함께 버린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 해당 사진이 투표지를 바꿔치기 하는 모습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16 기표하지 않은 투표지 발견

주요내용

- ▶ 개표과정에서 어느 정당에도 기표하지 않은 상태의 비례대표투표지 발견

사실확인

- ▶ 제20대 국선 등 과거 선거에서도 투표용지에 기표하지 않고 투표함에 투입한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하지 않고 투표함에 투입하는 원인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기표하지 않은 투표지가 발견된 것이 선거부정의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 ▶ 참고로 어느 정당에도 기표하지 않은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7 정규 투표용지와 다른 투표용지 전국에서 다량 발견

주요내용

- ▶ 좌우 또는 하단 여백이 불균형한 투표용지, 색상이 다른 비례대표 투표용지 등 정규 투표용지로 볼 수 없는 투표용지가 전국에서 다량 발견
 - ※ 좌우 여백 불균형(대전 동구, 대구 중구남구), 하단 여백 불균형(춘천·철원·화천·양구갑), 투표용지 색상의 차이 (서울 성북구, 구리시)

사실확인

- ▶ 사전투표용지발급기는 시중에서 사용되는 라벨 출력용 프린터로 용지의 좌우 여백이 달라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용지 급지 시 용지가 똑바르게 들어갈 수 있도록 용지 급지 가이드(앞, 뒷 부분)를 고정하여 사용하고 롤용지의 출력거리를 완화시키는 댐퍼(damper) 부품이 프린터 후면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 ▶ 또한, 사전투표 장비 배부 전 투표용지 좌우여백이 맞게 출력되도록 중앙위원회에서 장비 점검 시 용지 급지 가이드를 조정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 ▶ 좌우여백이 고르지 못한 투표용지는 ① 용지공급 시 용지 급지 가이드를 조정하여 한쪽으로 치우쳐서 들어갔거나, ② 용지를 끼우는 소켓이 틀어져 있거나, ③ 용지의 출력거리를 완화시키는 댐퍼 부품을 장착하지 않은 경우, ④ 장비 운반 중 충격에 의한 프린터 내부 헤드 부품의 위치가 변경되어 사용 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하단여백이 고르지 못한 투표용지는 롤용지가 거의 소진되어 투표용지발급기가 투표용지를 절단하기 전에 롤에 남아있는 용지가 투표용지와 함께 투표용지발급기에서 빠져나오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비례대표투표용지는 잉크젯프린터의 3가지 색상(빨강, 파랑, 노랑)의 조합하여 연두색 바탕색을 인쇄하나 ① 잉크노즐의 일부가 막히거나, ② 잉크 카트리지 불량 등으로 색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 향후 장비적 보완 검토, 사전투표관리관 등을 대상으로 롤용지 교체시기, 장착 후 점검 등 투표용지 발급기 사용요령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18 점힌 흔적이 없는 돈다발형 투표지 다량 발견

주요내용

구리시위원회가 보관 중인 투표지 보관상자에 1번을 찍은 투표지가 신권 다발처럼 묶인 채 발견

사실확인

- ▶ 선거인의 투표지를 접는 행태는 선거인에 따라 1회 또는 2회 이상 접는 경우, 가볍게 말아 쥐는 경우, 접지 않고 손으로 가리는 경우 등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 ▶ 해당 투표지는 관외사전투표지로 확인되었으며, 비례대표 투표지와 달리 지역구 투표지는 회송용봉투에 접지 않고 투입이 가능합니다.
 - ※ 해당 투표지는 법원의 증거보전 집행으로 인해 접은 상태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움.
- ▶ 개표소에서 투표함 개함 후 투표지분류기 투입을 위한 투표지 정리, 투표지분류기 통과, 투표지심사계수기 통과 후 후보자별로 묶음처리되어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는 접힌 자국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 ▶ 아울러, 투표용지는 일반 종이와 달리 투표지분류 시 ‘재확인대상 투표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주 번짐방지 기능, 종이걸림 방지를 위해 종이가 접힌 후 원 상태로 회복하는 기능 등이 적용된 특수 재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9 정상 기표된 투표지가 재확인대상으로 분류

주장내용

- ▶ 양천구위원회가 투표지분류기로 투표지 분류 시 “이용선후보자”(기호 1)에 정상으로 기표된 투표지가 재확인대상으로 분류

사실확인

- ▶ 투표지분류기 운용장치(노트북) 화면의 재확인대상코드(4040)는 투표지오염인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해당 사전투표용지의 좌우 여백의 불균형으로 인해 재확인대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20 투표용지는 남양주시, 선관위 직인은 의정부시

주장내용

- ▶ 남양주시을선거구의 투표용지인데 선관위 직인은 의정부시 직인이 날인된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조작

사실확인

- ▶ 사전투표용지에는 선거인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 청인이 날인되며, 사전투표관리관 칸에는 선거인이 방문한 해당 읍·면·동 사전투표관리관의 사인을 인쇄날인합니다.
- ▶ 주장내용 중 직인이라고 한 것은 사전투표관리관 사인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사전투표관리관의 사인 내용(녹양동사전투표관리관인)으로 볼 때 의정부시 녹양동 사전투표소를 방문한 남양주시을지역 선거인에게 정상적으로 발급된 관외사전투표지입니다.

21 포스트잇 형태의 붙어 있는 투표지 발견

주요내용

- ▶ 성북구갑선거구 사전투표 개표 시 투표지분류기운영부에서 사전투표지 앞·뒷장 상단 부분이 부착된 채 발견



사실확인

- ▶ 사전투표용지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발급기를 통해 한 장씩 따로 출력하여 선거인에게 교부하기 때문에 상단이 붙어 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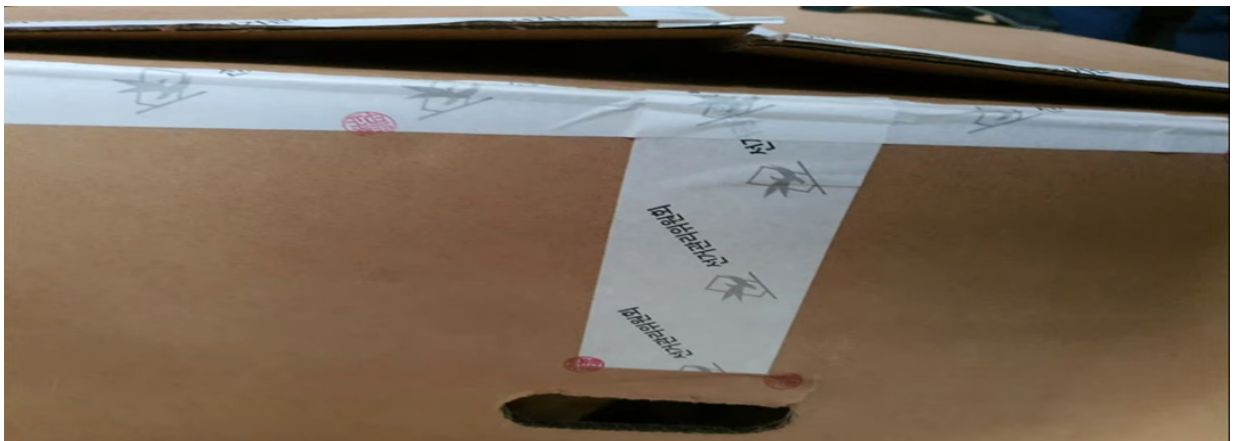
- ▶ 성북구선관위가 성북구갑선거구 관외사전투표지를 개표하는 과정에 일부 투표지가 서로 붙어 있는 현상은 회송용봉투 접착테이프 일부가 투표지 또는 개봉 과정에서 개표사무원 장갑 등에 묻어서 투표지로 옮겼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 참고로 회송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관내사전투표지와 선거일 투표지는 투표지가 붙어 있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증거보전

22 남양주선관위 투표지 보관상자 봉인상태 부적정 등

주요내용

- ▶ 남양주선관위 증거보전 집행 시 투표지 보관상자가 재봉인되거나 상단이 개봉된 채 보관된 투표지 보관상자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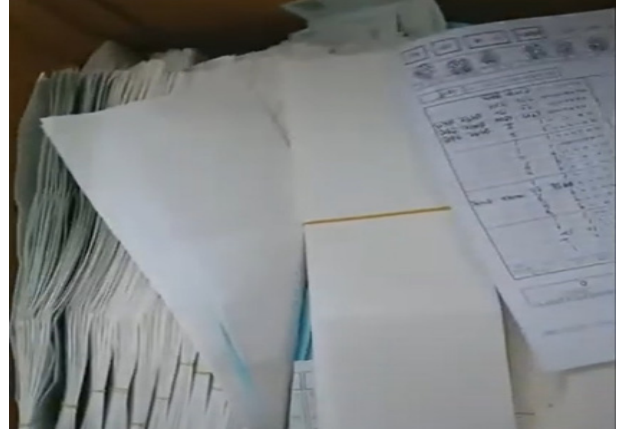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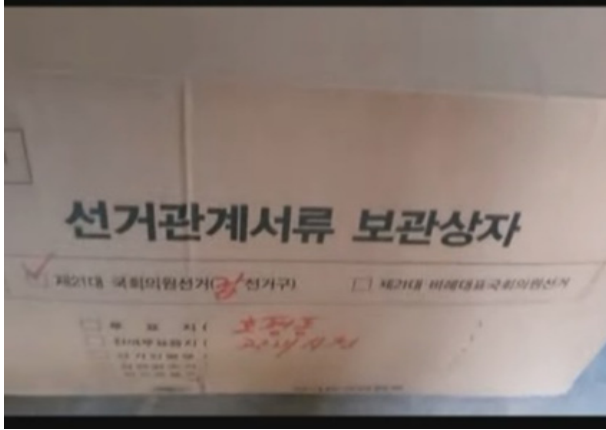


사실확인

- ▶ 남양주선관위에서 투표지 보관상자를 재봉인한 것은 기존 봉인상태를 보강하기 위해 다시 테이핑하고 봉인한 것입니다.
- ▶ 투표지 상자 상단이 개봉된 이유는 법원이 증거보전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관의 입회하에 상자 속 내용물이 증거보전대상 투표지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봉한 것으로 내용물 확인 후 법관의 사인으로 재봉인 하였습니다.
- ▶ 법관의 입회 하에 증거보전 집행을 위해 투표지 보관상자를 개봉한 것 외에 투표지 보관상자가 개봉된 것은 없습니다.

주요내용

- ▶ 남양주선관위 증거보전 집행 시 지역구 관내사전투표지라 기재된 투표지 보관상자 안에서 비례대표 관내사전투표지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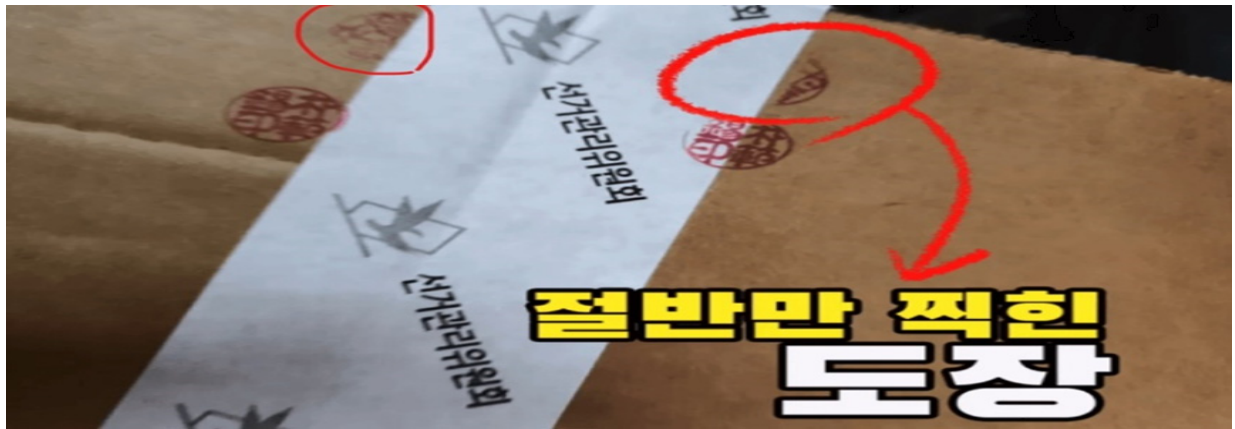
사실확인

- ▶ 개표소 정리부에서는 개표가 완료된 투표지를 투표지 보관상자에 담아 봉합·봉인하고, 투표지 보관상자 겉면에 보관상자에 들어있는 투표지 종류 등을 기재합니다.
- ▶ 지역구 투표지로 기재된 투표지 보관상자에 비례대표 투표지가 보관되어 있었던 것은 정리부 개표사무원이 보관상자 겉면에 선거종류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증거보전 집행 시 법관의 입회하에 내용물을 확인하고 기재사항을 정정한 후 재봉인하였습니다.
- ▶ 향후 정리부 개표사무원에게 투표지 포장 시 선거종류 등 기재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등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3 투표지 보관상자 위원장 봉인 해제 후 재봉인

주요내용

- ▶ 안산시단원구선관위가 투표지 보관상자를 열어 투표지를 바꾼 후 다시 봉인



사실확인

- ▶ 개표 당일 개표소에서 투표용지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더 많이 발생한 투표구의 투표지수를 재확인하거나, 투표지가 선거별로 잘못 구분·포장된 경우 재구분·포장을 위해 이미 봉인된 투표지 보관상자를 열어 확인한 후 재봉인하였습니다.

24 선관위의 통합선거인명부 제출 거부

주요내용

- ▶ 선관위에서 법원의 증거보전 집행 시 통합선거인명부 및 선거인명부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는 가짜서명으로 조작된 투표결과에 맞게 투표자수를 맞춰 놓지 못해서 공개를 거부하는 것



사실확인

- ▶ 해당 선관위는 증거보전 집행 시 선거인명부 및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USB)을 제출하였으며, 해당 선거인명부에는 사전투표기간에 투표한 선거인과 선거일에 투표한 선거인의 기록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 ▶ 다만, 통합선거인명부는 중앙선관위에서 관리하는 자료이므로 해당 선관위에서 제출할 수 없었던 것이며, 법원에서도 중앙선관위에 관리 중인 웹서버·통합서버 등 자료에 대해서는 증거보전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25 증거보전 집행 시 비례대표투표지 미제출

주요내용

- ▶ 법원의 증거보전 집행 시 법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구·시·군선관위에서 지역구 투표지만 제출하고 비례대표 투표지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

사실확인

- ▶ 공직선거법 제228조(증거조사)에 따라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 신청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할 수 있습니다.
- ▶ 지역구 후보자는 비례대표선거 증거보전의 정당한 신청권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증거보전 집행 시 법관에게 관련 규정을 설명한 것입니다.

26 투표함 투입구에 부착된 특수봉인지 훼손

주요내용

- ▶ 구·시·군선관위에서 선거결과 조작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제21대 국선에 사용한 투표함의 투입구에 부착된 특수봉인지를 보존하지 않고 제거하여 보관

사실확인

- ▶ 투표소에서 개표소로 이송한 투표함은 투표함 앞·뒤쪽과 투표지 투입구에 특수 봉인지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 ▶ 투표함 앞뒤쪽의 특수봉인지는 투표개시 전 투표관리관이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자물쇠로 투표함 앞뒤쪽을 잠근 후 투표 관리관과 투표참관인이 서명하여 자물쇠 위에 부착한 것이며,
- ▶ 투표지 투입구의 특수봉인지는 투표마감 후 투표관리관이 투표참관인 참관 하에 투입구 덮개를 닫고 봉쇄 잠금핀을 끼운 후 투표관리관과 투표참관인이 서명하여 그 위에 부착한 것입니다.
- ▶ 개표소에서는 개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 봉인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투표함 앞뒤쪽에 부착된 특수봉인지와 자물쇠를 제거하여 투표함 뚜껑을 열고 투표지를 꺼내 개표합니다.
- ▶ 개함이 완료된 빈 투표함은 개표소 내 별도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였다가 개표가 완료되면 다음 선거에서 투표함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투표지 투입구에 부착된 특수봉인지 등을 개표소 내에서 제거하거나 구·시·군선관위로 이송하여 제거한 다음 보관합니다.

27 투표함 은닉 논란

주요내용

- ▶ 법원의 증거보전 집행 전에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지시로 투표함 은닉

사실확인

- ▶ 서울 소재 구·시·군선관위는 청사가 협소하여 투표함 등 선거장비를 집중창고에 일괄 보관하고 있습니다.
- ▶ 이에 종로구선관위는 서울시선관위의 선거장비 이송계획에 따라 투표함을 집중 창고로 이송하여 보관한 것이며, 해당 투표함은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선거장비 등

28 임차서버 폐기로 선거조작 증거인멸

주요내용

- ▶ 제21대 국선에서 임차서버를 사용하고 5월 1일 임차서버를 포맷(초기화)하여 조작선거의 증거를 인멸



사실확인

- ▶ 우리 위원회는 선거기간 동안 선거정보시스템 접속자 수가 평상 시 보다 40배 ~ 50배 정도 증가하기 때문에 보유서버(웹서버) 성능을 보강하고, 재해·재난으로 주센터 운영이 불가할 경우 사전투표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거 때마다 임시로 운영되는 통합명부 백업센터 운영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 ▶ 그러나 투·개표 자료 등 선거관련 데이터는 임차서버(웹서버)에 저장되지 않고 위원회 자체 보유 서버에 저장되어 있으며, 선거인명부 데이터도 주센터에 저장된 동일한 내용이 통합명부 백업센터 운영 장비에 보조적으로 저장되므로 임차서버를 보존할 실익은 없습니다.
- ▶ 또한, 임차서버에 남아있는 IP 등 시스템 정보, 통합명부 백업센터에 저장된 개인정보(선거인명부)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반납하는 것입니다.

29 사전투표장비에 중국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여 결과 조작

주요내용

- ▶ 선관위가 LG유플러스 장비를 사용하기로 결정, 중국으로 데이터가 전송되어 중국에 의해 사전투표가 조작 가능하다고 주장

사실확인

- ▶ 선관위가 이번 선거에서 사용한 유·무선통신장비는 조달청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국내 사업자인 LG유플러스로부터 구매하였습니다.
- ▶ LG유플러스는 유·무선통신장비를 국가표준(KS X 3264,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8-23호)에 따라 전량 제작하였으며, 중국 화웨이 장비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 또한, 통합선거인명부 확인을 위해 사용하는 사전투표통신망은 선거전용통신망으로 중앙선관위 전산센터와 각 사전투표소를 연결하는 전용 폐쇄망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유출·조작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 ▶ 사전투표는 선거인이 직접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투표함에 투입하고 개표소로 이송하여 투표지를 개표하며, 전 과정을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이 참관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도 조작할 수 없습니다.
- ▶ 우리 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주장을 하는 유튜브 영상 게시자에 대해 사실관계를 안내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유튜버 2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30 비주얼베이직 프로그램 사용 개표시스템 집계 조작

주요내용

- ▶ 개표시스템에 비주얼베이직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개표 시 특정 후보자에게 표를 추가해 개표결과를 조작

사실확인

- ▶ 선관위에서 사용하는 투·개표보고시스템은 자바(JAVA)를 기반으로 하는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 개표 보고(집계) 시 다른 통신망과 분리된 폐쇄망(선거전용통신망)을 사용하므로 해킹이 불가하고, 사전 승인된 보고용 PC 외에는 투·개표보고시스템 접속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 ▶ 또한, 개표결과(개표상황표)는 개표가 종료될 때마다 개표소 내부에 게시·첩부하고 있고, 개표참관인과 언론에도 제공하는 동시에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공개하고 있으며, 선거 이후에도 선거소송을 통해 투표지 실물과 대조하여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으므로 집계 과정에서 조작은 있을 수 없습니다.

31 선거장비는 인터넷 또는 무선통신 사용

주요내용

- ▶ 선거장비는 인터넷 선이 아닌 업무용 전용선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중앙선관위에 이번 국선에 업무용 전용선을 설치하는 별도의 사업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전용선이 아닌 인터넷 선을 이용했거나 무선통신을 사용한 것으로 추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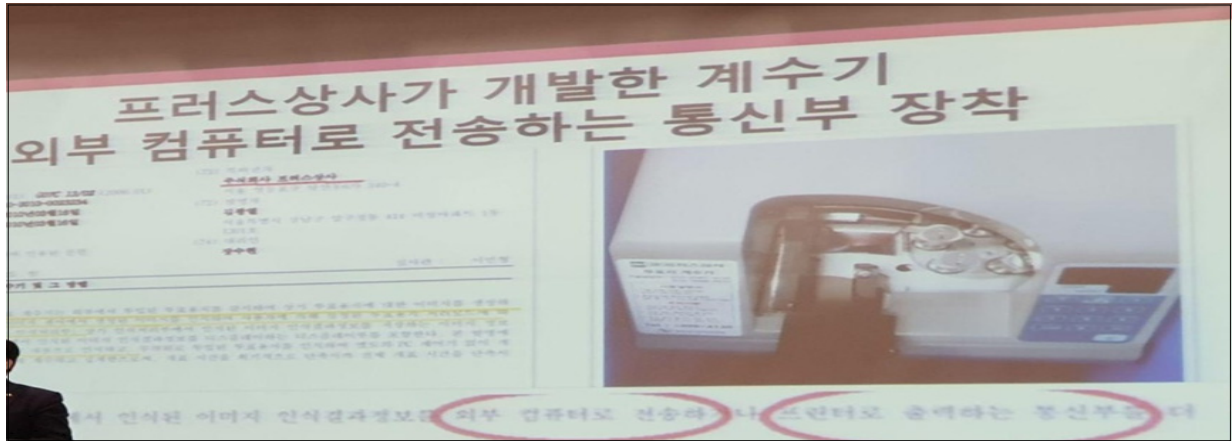
사실확인

- ▶ 우리 위원회는 사전투표 관리를 위해 전용선(선거전용통신망)을 구축·운영 하고 있으며,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관리를 위한 전용선 구축 사업은 2015년 KT와 체결한 장기 계약(2015.12.23 ~ 2020.12.31.)에 의해서 회선을 사용하였습니다.
- ▶ 사전투표소 선거전용통신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센터와 사전투표소를 연결하는 전용선으로 일반인이 사용하는 인터넷망과 절대 혼용되지 않으며, 폐쇄·전용 통신망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2 투표지 심사계수기에 데이터 전송 및 출력기능이 있어 정보유출 가능

주요내용

- ▶ 투표지 심사계수기에 데이터 전송 및 출력기능이 있어 개표결과를 외부로 유출



사실확인

- ▶ 투표지 심사계수기는 선거 때마다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 ▶ 제21대 국선 임차 사업자인 프러스상사가 CIS 이미지 센서를 이용 다양한 투표지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계수 및 집계까지 가능한 ‘투표용지 개표 계수기 및 그 방법(출원번호 1020100023234)’ 관련 특허를 2010. 3. 16. 취득하였으나,
- ▶ 우리 위원회는 동 기술이 적용된 투표지 심사계수기를 임차한 사실이 없으며, 제21대 국선에서 사용한 투표지 심사계수기(기본형, 확장형)는 단순 보조장비로 CIS 이미지센서나 네트워크 연결을 할 수 있는 부품이 없습니다.

33 투표지분류기에 의한 개표결과 조작

주요내용

- ▶ 투표지분류기에서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를 1번 후보자로 분류하여 개표 조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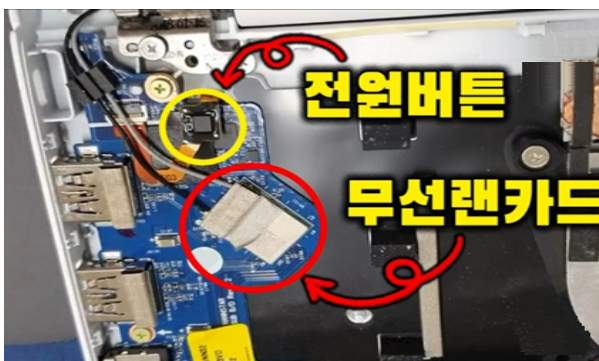


사실확인

- ▶ 투표지분류기에서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가 특정 후보자로 분류되거나 기표한 투표지가 후보자 간 혼입될 수는 없습니다.
- ▶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용지의 기표란 외의 후보자 기호, 정당명 란에 기표된 경우에도 해당 후보자의 표로 분류하기 때문에 기표란에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 사진만으로는 기표가 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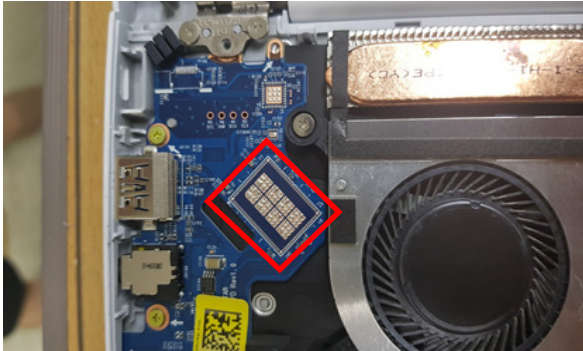
주요내용

- ▶ 투표지분류기에 사전투표지의 2차원 바코드(QR코드)를 인식하는 스펙트럼센서가 있고, 운용장치(노트북)의 DNS 조작을 통해 총 투표자수와 후보자별 득표수를 특정 IP로 전송하며 투표지분류기 운용장치와 프린터에 무선랜카드가 존재하여 개표결과를 외부로 전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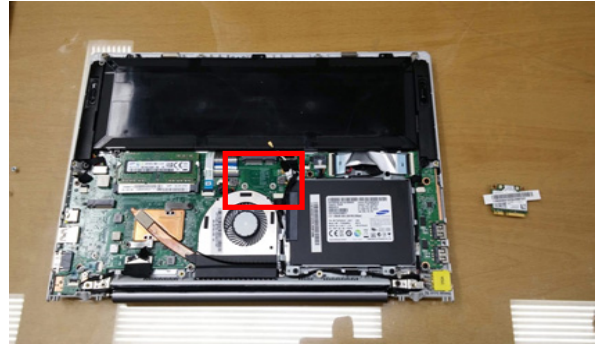


사실확인

18년형 투표지분류기 노트북(내부)



14년형 투표지분류기 노트북(내부)



- ▶ 여러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종류가 다른 선거의 투표지를 투표지분류기에 투입하면 광학센서가 투표지이미지를 처리한 후 운용장치(노트북)에 이미지를 전달하고, 운영프로그램에서는 2차원바코드(QR코드)를 인식하여 선거별 · 선거구별로 분류할 수 있으나, 국선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 ▶ 투표지분류기 운용장치(노트북)는 랜카드 제거 후 각급 선관위에 배부되므로 외부 통신망과 연결될 수 없고 랜카드가 존재하지 않아 DNS 정보를 입력할 수도 없습니다.
- ▶ 참고로 18년형 투표지분류기 운용장치의 무선랜카드는 제거되어 우리 위원회에 납품되었으며, 14년형 운용장치의 무선랜카드는 제품 납품 후 직접 탈거하였습니다.
- ▶ 투표지분류기 프린터(엡손, WF-100 모델)는 제조사에 무선랜카드 탈거를 요청하였으나 프린터 무선랜카드가 착탈형이 아닌 메인보드에 제거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제거하지 못하고 프린터의 기본환경설정(BIOS : 장착된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기능)에서 비활성화하여 통신이 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34 투표지분류기에 무선통신 장치 존재

주요내용

- ▶ 투표지분류기에 무선통신 장치가 존재하며 투표지분류기와 선관위 서버 간 무선통신을 통해 선거구별 선거인수를 개표상황표에 표기

사실확인

- ▶ 투표지분류기에는 무선통신 장치가 없으며, 선거인수 정보는 선거일 전 보안 USB를 이용하여 투표지분류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 ▶ 투표지분류기에서 투표지를 읽고 분류한 모든 데이터는 훼손 및 장애발생 대비 어딘가로 무선통신을 통해 실시간 백업

사실확인

- ▶ 투표지 분류 시 해당 투표지이미지를 노트북에 저장하며, 개표 종료 후 구·시·군선관위가 별도 외장장치(USB 또는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봉인·관리할 뿐 무선통신으로 실시간 백업하지 않습니다.

35 투표지분류 시 후보자 혼입 발생

주요내용

- ▶ 투표지분류기로 부여군 옥산면 관내사전투표 개표 시 1번 후보가 2번 후보에 비해 100표 정도 더 많이 나왔으나 분류기 재부팅 후 재분류한 결과 2번 후보가 1번 후보에 비해 11표 정도 더 나왔다고 주장

사실확인

- ▶ 옥산면 관내사전투표 개표 중 개표사무원이 착오로 유효투표지와 재확인대상 투표지를 함께 고무밴딩 처리한 사실을 책임사무원이 확인하여 투표지분류기로 옥산면 관내사전투표지를 재분류한 사실은 있으나,
- ▶ 투표지분류기를 재부팅하거나 투표지분류기에서 후보자 간 투표지가 혼입된 사실은 없습니다.

주요내용

- ▶ 부여군 개표소에서 지역구 투표지 분류결과 사전투표에서 2번 후보 투표지가 1번 후보 투표지에 비해 재확인대상으로 많이 분류

사실확인

- ▶ 투표지에 기표된 기표모양이 불분명한 경우 해당 투표지는 투표지분류기에서 재확인대상으로 처리됩니다.
- ▶ 재확인대상으로 처리되는 것은 투표지의 불분명한 기표모양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며, 투표지분류기의 오류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 또한, 투표지분류기에서 재확인대상으로 처리된 투표지는 심사집계부에서 육안으로 심사하여 후보자별 유효투표지 및 무효투표지로 구분합니다.

36 투표지분류기 고장으로 교체

주요내용

- ▶ 성북구선관위 직원이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 투표용지교부수와 실제 투표지 묶음이 일치하지 않자 투표지분류기 오류라고 발언하며 투표지분류기 교체

사실확인

- ▶ 석관동 제4투표구 개표 시 개표사무원이 투표지를 투표지분류기에 투입하면서 130매를 누락하여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130매 적은 것으로 나타나자 책임사무원이 이를 성북구선관위 직원에게 그 상황을 알렸습니다.
- ▶ 성북구선관위 직원이 정확한 원인규명과 재분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투표지 분류기의 오류라고 잘못 설명하고 해당 투표지분류기를 교체하였습니다.
- ▶ 교체한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결과 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지수는 일치하였습니다.

37 투표지분류기에 불필요한 고성능 칩 2개 탑재

주장내용

- ▶ ARM 또는 자이링스(Xilinx) 한 개 칩만 탑재하여도 분류가 가능한데도 고의적으로 2개 고성능 반도체 칩을 투표지분류기에 탑재
- ▶ 조작프로그램 원격 인스톨과 삭제, 하나의 칩에서 처리한 값을 외부 통신이나 USB 등을 통해 다른 칩을 이용하여 데이터 조작, 투표지분류기 전원을 끄면 초기화 되도록 하여 증거 인멸 가능

사실확인

- ▶ 투표지분류기 메인보드 내 ARM(이송경로의 모터, 팬, 센서를 순차적 동작 역할)칩과 자이링스(Xilinx칩, 투입구 픽업 모터, 적재함 게이트, 초음파 센서를 동시 동작 역할)이 내장되어 있으나 해당 칩은 투표지분류기 부품들을 동작하기 위한 주요 부품으로 ARM 또는 자이링스 중 한 개의 칩만 사용 시 ARM은 속도 및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되고, 자이링스는 순차적인 제어(모터, 센서, 게이트)역할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원활한 투표지 분류를 위해 2개의 칩을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 ▶ 외부통신이나 USB 등을 통한 조작이 불가능하며, 전원을 On/Off 하더라도 ARM과 자이링스는 설정된 기능을 유지합니다.

38 광주정부통합센터에 서버 미설치

주요내용

- ▶ 선거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담는 서버는 광주 정부통합센터에 설치되고 백업은 대전 통합센터에서 수행해야하나, 서버는 과천시재 중앙선관위 내부에 설치됐고 백업 서버는 서울 종로 사무소에 설치

사실확인

-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본운영규정을 통해 관리원에 입주한 행정기관은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며, 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 헌법재판소와 같은 헌법기관은 입주 대상이 되지 않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서버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 ▶ 광주정부통합센터 보안규정이 까다롭고 엄격하기 때문에 입주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헌법기관의 독립성에 따라 입주하지 않은 것입니다.

39 전산장비 사업의 투찰률이 100%에 근접

주요내용

- ▶ 선관위 선거 관련 12개의 전산장비 사업 투찰률이 100%에 거의 근접

사실확인

- ▶ 투표지분류기와 투표용지 발급기의 기술지원 사업은 상용 전자제품이 아닌 선거라는 특수 용도에 사용하는 선거장비의 부품 조달 등 원활한 기술지원을 위해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 ▶ 그 외 10개 사업은 모두 조달청 입찰을 통해 추진하였으며, '제21대 국선 투표지 심사계수기 임차사업(519mm)'을 제외한 9개 사업은 2회 유찰로 인해 최종 수의계약 한 것이며,
- ▶ 투표지 심사계수기(519mm) 사업은 2개 업체가 응찰하였음에도 99.899%의 투찰률이 나온 것은 신규 제작 장비로 예정가격 산정이 어려워 조달청에서 비예가* 산정방식으로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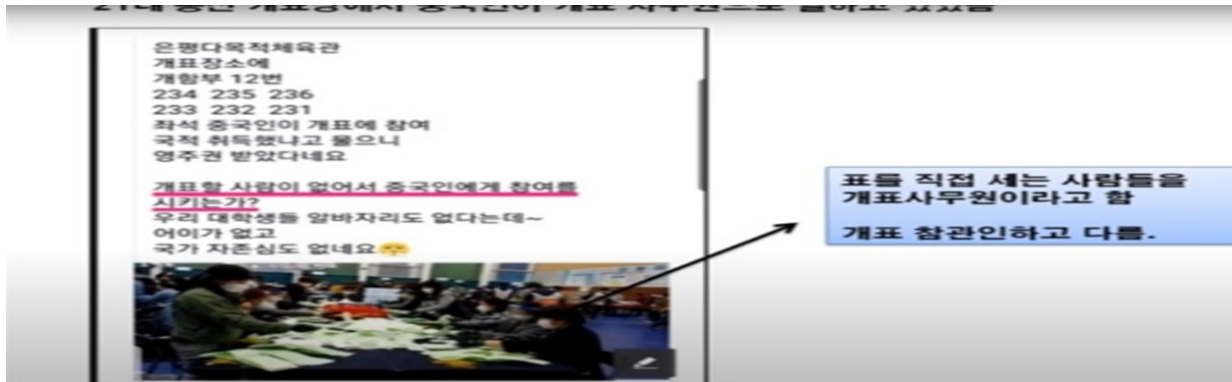
*예정가격을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입찰 가격으로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법

기 타

40 중국인을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하여 개표결과 조작

주요내용

- ▶ 은평구선관위에서 개표사무원 중 6명을 중국인으로 위촉하여 개표결과를 조작 한다는 주장



사실확인

- ▶ 은평구선관위는 총 542명의 개표사무원 중 62명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위촉 하였습니다.
- ▶ 중국인으로 의심받은 6명은 모두 의용소방대원으로 1명은 영주권자(중국 국적)이며, 다른 5명은 한국인 1명, 한국국적 취득자 4명으로 모두 선거권이 있는 주민등록자였습니다.
- ▶ 영주권자가 개표사무원으로 참여한 것만으로 선거부정의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Ⅲ 선거관리가 완벽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 투·개표 절차에 많은 인력의 참여로 일부 과정에 다소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는 단순 실수나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선거부정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살피고 관리인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① 잔여투표용지 탈취

주장내용

- ▶ 투표관리관 사인이 날인되지 않고 일련번호가 절취되지 않은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무더기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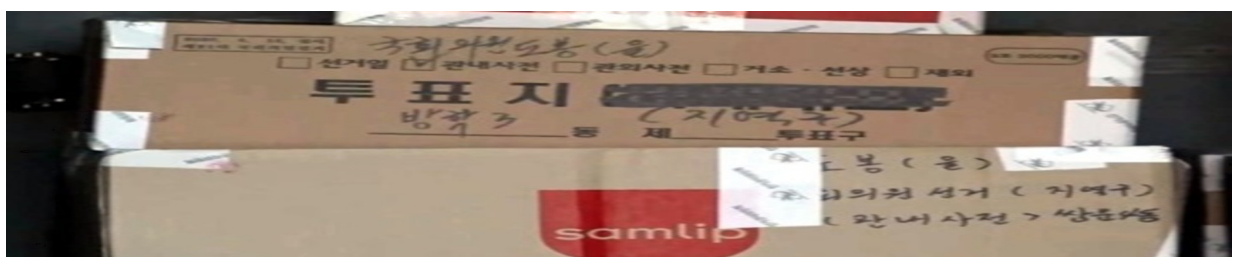
사실확인

- ▶ 해당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구리시위원회 잔여투표용지(6매)이며, 당일 개표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잔여투표용지 등을 보관중이던 개표소 내 체력단련실을 출입하여 탈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 향후 개표소 내에 보관하는 잔여투표용지 등 선거관계서류는 CCTV 또는 시건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거나 관리인력을 배치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② 빵 상자에 투표지 보관

주요내용

- ▶ 구·시·군선관위에 보관중인 투표지 일부가 삼립빵 상자에 보관



사실확인

- ▶ 우리 위원회는 개표가 완료된 투표지를 효율적으로 보관하기 위해 투표지보관 상자를 별도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 ▶ 구·시·군선관위는 투표지보관상자 소요수량을 예상하여 미리 제작하였으나 사전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아지면서 일부 선관위에서 예상한 수량을 초과하게 되어 부족분이 발생하였습니다.
- ▶ 이에 해당 구·시·군선관위는 개표사무원에게 간식으로 제공한 빵 또는 야식상자를 투표지보관상자로 대체 사용한 것이며, 투표지는 규정에 따라 봉인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 투표지 보관상자의 규격이나 모양이 법정사항은 아니지만 투표지 보관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상품의 상자 등을 대체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물품을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선거인수보다 투표수가 많은 관내사전투표 발생

주요내용

- ▶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관내사전투표에서 선거인수보다 투표수가 많아 기권수가 마이너스(-)로 표기

	중제1동제3투	3,291	1,878	653	1,145	22	10	30	1,860	18	1,413
	중제1동제4투	3,210	1,797	676	1,052	25	7	26	1,786	11	1,413
	중제1동제5투	2,852	1,681	542	1,073	15	9	30	1,669	12	1,171
중제2동	소계	13,297	8,631	3,145	5,175	104	35	114	8,573	58	4,666
	관내사전투표	3,138	3,137	1,462	1,605	17	8	35	3,127	10	1
	중제2동제1투	1,197	578	153	390	10	4	11	568	10	619
	중제2동제2투	2,784	1,438	481	870	31	11	26	1,419	19	1,346
	중제2동제3투	2,911	1,612	476	1,085	20	6	18	1,605	7	1,299
	중제2동제4투	3,267	1,866	573	1,225	26	6	24	1,854	12	1,401
과제1동	소계	14,911	14,501	4,279	5,602	123	40	177	10,221	80	4,610
	관내사전투표	3,611	3,612	1,929	1,563	29	10	66	3,591	21	-1
	과제1동제1투	2,797	1,321	473	733	18	9	24	1,257	14	1,525
	과제1동제2투	2,456	1,520	480	954	33	6	31	1,504	16	936
	과제1동제3투	2,752	1,657	623	963	17	11	30	1,644	13	1,095
	과제1동제4투	3,295	2,241	780	1,389	26	4	26	2,225	16	1,054
과제2동	소계	25,835	17,148	6,974	9,484	203	71	277	17,009	139	8,687
	관내사전투표	5,010	5,010	2,538	2,316	36	22	72	4,984	26	0
	과제2동제1투	3,204	1,631	577	982	24	4	30	1,617	14	1,573
	과제2동제2투	3,868	1,911	730	1,078	29	4	42	1,889	28	1,957
	과제2동제3투	2,844	1,636	612	973	8	7	23	1,623	13	1,208
	과제2동제4투	2,675	1,630	640	917	23	11	27	1,618	12	1,045
	과제2동제5투	3,127	2,025	726	1,211	23	14	28	2,002	23	1,105

사실확인

- ▶ 사전투표는 관내사전투표와 관외사전투표가 동시에 실시되므로 사전투표 과정에서 관내사전투표인이 관외사전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거나 관외사전투표인이 회송용봉투에 투표지를 넣지 않고 관외사전투표함 또는 관내사전투표함에 넣는 사례가 있습니다.
- ▶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개표소에서 투표지를 확인하여 해당 지역의 개표결과로 합산하여야 하지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는 전국이 동일하기 때문에 개표소에서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합니다.
- ▶ 또한, 개표과정에 다른 투표함의 투표지가 혼입되는 경우 관내사전투표 선거인 수보다 투표수가 많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 이는 선거인이 실수 등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투표하였거나 개표소에서 착오가 발생하여 생긴 결과로서 사전투표 뿐만 아니라 선거일 투표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이 사전투표 결과를 조작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 ▶ 향후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이 실수로 잘못 투입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투개표 사무원 교육을 강화하여 개표의 정확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투표함 자물쇠 일부 미봉쇄

주장내용

- ▶ 대전동구위원회는 판암2동 제2투표소 투표함이 특수봉인지가 훼손되고 자물쇠로 봉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표 진행

사실확인

- ▶ 투표관리관이 투표개시 전 투표함 이상 유무 검사 후 투표함 뒷면을 자물쇠로 봉쇄하지 않고 특수봉인지를 부착하였고, 투표마감 후 개표소 이송과정에서 특수봉인지가 부착된 자물쇠 부위를 잡고 이동하여 특수봉인지 윗부분이 탈착되자 이를 재부착한 것입니다.

- ▶ 동구위원회는 해당 투표함 접수 시 특수봉인지 훼손에 대한 개표참관인의 이의 제기로 개표소에 별도 적치·보관 후 개함을 위한 참관인의 봉쇄·봉인 이상유무 확인 중 투표함 뒷면이 자물쇠로 봉쇄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 ▶ 동구위원회는 위원회의를 개최하여 투표록 기재사항, 투표함 앞면 특수봉인지 부착 및 서명 상태, 경비경찰·투표참관인의 투표함 인계과정 참여 등을 토대로 정당한 투표함이라고 의결한 후 해당 투표함을 개함하여 개표하였습니다.
- ▶ 향후 투표소에서의 투표마감 시 투표함의 봉함·봉쇄, 개표소에서 투표함 접수 시 투표함 봉함·봉쇄 누락여부 등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